



2025년

기금존치 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년

기금존치 평가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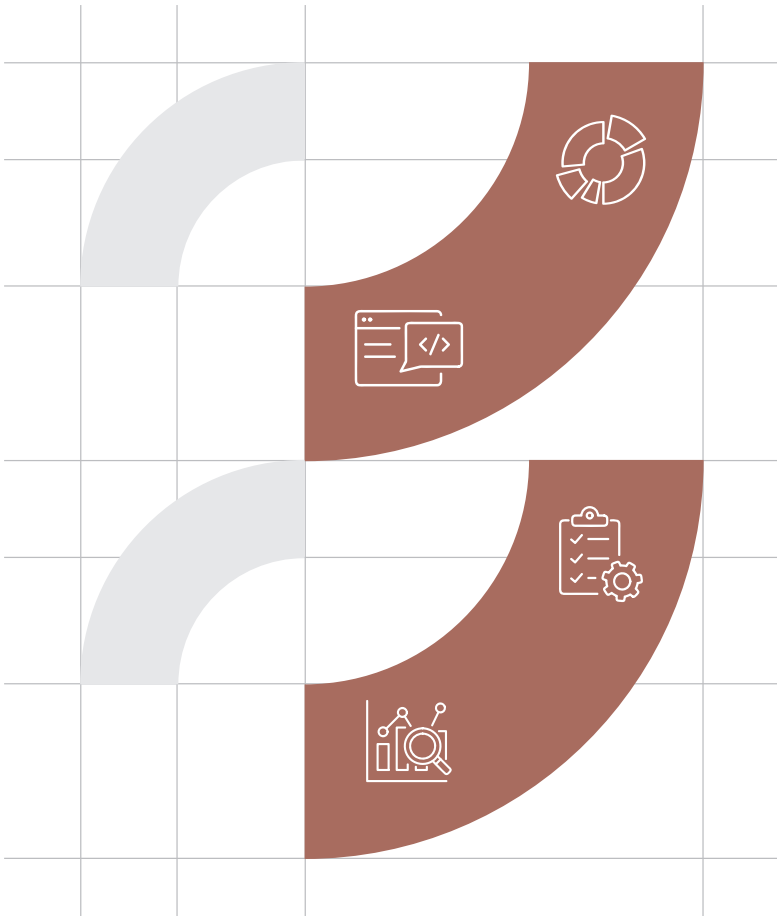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2025. 5.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년

기금존치 평가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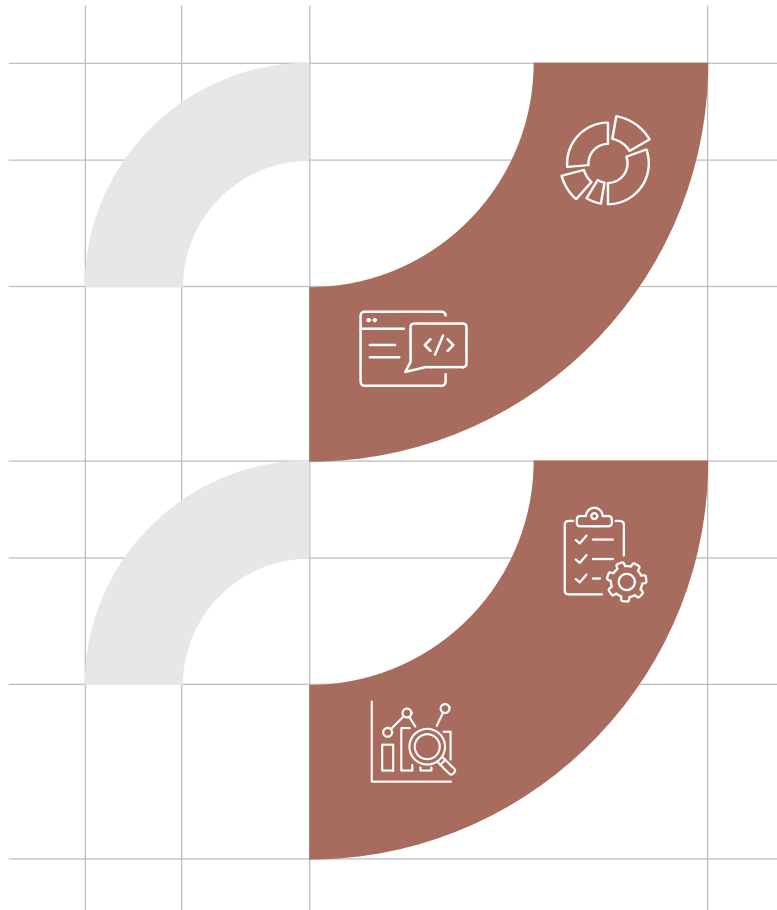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2025. 5.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 차

I. 2025년 기금존치평가 개요	1
1. 평가의 목적	1
2. 평가의 근거	1
3.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및 운영	1
4. 기금존치평가 방법	4
5. 평가 대상기금	7
II. 2025년 기금존치평가 평가결과 종합	8
1. 2025년도 평가 개요 및 특징	8
2. 평가 결과	8
3. 평가 향후 계획	10
III. 2025년 기금별 기금존치평가 결과	11
【국가보훈부】	
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5
【국방부】	
2. 군인연금기금	23
【국토교통부】	
3.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31
4. 주택도시기금	36

【금융위원회】

5. 공적자금상환기금	45
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49
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8
8. 신용보증기금	66
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2
1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7

【기획재정부】

11. 기후대응기금	85
------------------	----

【대법원】

1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95
---------------------	----

【문화체육관광부】

13. 지역신문발전기금	103
--------------------	-----

【여성가족부】

14. 양성평등기금	113
15. 청소년육성기금	126

【인사혁신처】

16. 공무원연금기금	137
-------------------	-----

【중소벤처기업부】

17. 기술보증기금	143
1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48

【해양수산부】

19. 수산발전기금	157
------------------	-----

I. 2025년 기금존치평가 개요

1. 평가의 목적

-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기금 재원 구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금 제도개선 및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 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 경감에 기여함.

2. 평가의 근거

-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함.
 - 이를 위해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및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에 의거하여 기금별 존폐 기준을 확립함.

3.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및 운영

가. 추진경과

- '25년도 평가지침 통보(기획재정부 → 각 부처, '25.1월)
- 기금별 조사·평가 자료 접수('25.2.28)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25.3.1.~3.28)
- 중간보고서 작성완료 및 기금 검토의견 수렴('25.4.1.~4.28.)
- 기금존치평가보고서(안) 제출('25.5.16.)
- 차관회의('25.5.21.), 국무회의('25.5.28.) 보고 후 국회제출('25.5.30.)

나. 기금운용평가단 명단

- 기금운용평가단은 단장 및 자산운용평가반, 존치평가반 등으로 구성됨.

< 2025년 기금운용평가단 >

구분	성명 (출생)	소속 및 직위	학력 및 주요경력
단장	이준서 (1968)	동국대 교수 (경영학)	- 시러큐스대 박사(재무학) - 前 한국증권학회 회장

【자산운용평가】

팀장 (5)	강경훈 (1968)	동국대 교수 (경영학)	메릴랜드대 박사(경제학)
	김누리 (1972)	한양대 교수 (경영학)	미시간대 박사(재무학)
	김대진 (1974)	성균관대 교수 (금융)	반더빌트대 박사(재무학)
	남재우 (1970)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카이스트대 박사(경영공학)
	최영목 (1969)	청주대 교수 (경영학)	중앙대 박사(경영학)
팀원 (11)	권경민 (1974)	홍익대 교수 (경영학)	미시간주립대 박사(재무학)
	김솔 (1976)	한국외대 교수 (경영학)	카이스트대 박사(경영공학)
	김지훈 (1985)	연세대 교수 (경영학)	카이스트대 박사(경영공학)
	류두진 (1980)	성균관대 교수 (경제학)	카이스트대 박사(재무금융)
	박선영 (1982)	동국대 교수 (경제학)	예일대 박사(경제학)
	이동욱 (1971)	고려대 교수 (경영학)	오하이오주립대 박사(경영학)
	이보미 (1982)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텍사스오스틴대 박사(경제학)
	이창준 (1981)	한국외대 교수 (경영학)	카이스트대 박사(재무관리)
	전진규 (1971)	동국대 교수 (경영학)	알라바마대 박사(재무학)
	최장호 (1971)	서강대 교수 (경영학)	위스콘신대 박사(경영학)
	한상용 (1981)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워싱턴주립대 박사(재무학)

구분	성 명 (출생)	소속 및 직위	학력 및 주요경력
----	-------------	---------	-----------

【대규모팀】

팀장 (1)	김상배 (1968)	경북대 교수 (경영학)	• 호주 모나시대 박사(재무관리)
팀원 (3)	강소현 (1979)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카이스트대 박사(경영공학)
	김중혁 (1967)	고려대 교수 (경영학)	• 일리노이대 박사(재무학)
	박종상 (1974)	숙명여대 교수 (경제학)	• 미시간대 박사(경제학)

【기금존치평가】

반장 (1)	김지영 (1979)	인천대 교수 (경제학)	• 위스콘신대 박사(경제학)
팀장 (2)	이동규 (1977)	서울시립대 교수 (경제학)	• 아이오와주립대 박사(경제학)
	정일환 (1977)	성균관대 교수 (행정학)	• 시라큐스대 박사(행정학)
팀원 (12)	강지원 (1975)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이화여대 박사(사회복지학)
	나경덕 (1984)	삼화회계법인 이사	• 성균관대 학사(경영학)
	순병민 (1983)	충남대 조교수 (농업경제학)	• 미주리주립대 박사(농업경제학)
	신상화 (1980)	충남대 조교수 (무역학과)	• 미시간대 박사(경제학)
	신헌태 (1983)	제주대 조교수 (행정학과)	• 서울대 박사(정책학)
	우상철 (1984)	경북회계법인 이사	• 서울대 학사(경제학)
	이형찬 (1970)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건국대 박사 수료(부동산정책)
	임성묵 (1972)	동국대 교수 (경영학과)	• 서울대 박사(경영과학)
	장영욱 (19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런던정경대 박사(경제사)
	이선호 (1981)	한남대 부교수 (중국경제통상학)	• 고려대 박사(경제학)
	한종석 (1979)	동국대 교수 (경제학)	• 로체스터대 박사(경제학)
	현보훈 (198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중앙대 박사(경제정책학)

4. 기금존치평가 방법

가. 평가지표의 구성

- 존치평가 지표는 기금존치의 타당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등 2개의 지표로 구성됨.
-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지표는 기금목적의 유효성 및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을 평가
 - 기금의 목적이 현재에도 유효하며,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기금 목적과 부합하며, 중장기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충분한지에 대해 평가
 -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이 타 기금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지에 대해 평가
 - 정부정책,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기금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지표는 기금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조성 방법 적정성 및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을 평가
 - 기금의 자체수입비중,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 등을 바탕으로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을 평가
 - 기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과거 실적 및 향후 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기금 규모를 산출하여, 현재 기금 규모와 비교·평가
- 각 평가지표는 지표별로 구성된 세부평가지표 안에 제시된 <평가내용>과 <작성내용>으로 구성됨.
- <평가내용>은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평가의 목표와 기준을 설명
- <작성내용>은 각 평가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나. 평가결과

- 평가결과는 세부평가지표별 평가에 따라 기금존치의 타당성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각각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기금의 종합적인 총평을 제시함.
-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 (기금)존치/조건부존치/통합/폐지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재원구조의 적정성)적정/부적정
 - (재원조성방법)적정/부적정
 - (중기가용자산 규모)적정/과다/과소

다. 평가결과 후속조치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에 대해 추진사항 및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금 또는 기관 전용 홈페이지에 공시함.

참고 1

기금 존치평가 기준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평가기준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①-1 기금목적의 유효성	i.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금의 설치목적이 유효한가? ii.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의 중장기 운용계획이나 방향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는가? iii.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설치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가?
	①-2 타기금과의 유사성·중복성	i.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이나 역할이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가?
	①-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i. 정부정책,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기금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i. 기금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②-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i. 기금의 과거 5개년 및 향후 3년 누적의 자체수입이 동기간 [사업비+기금운영비+ 공자기금이자상환+차입금이자상환]의 2/3 이상인가? ii. 기금의 과거 5개년 및 향후 3년 누적의 총 수입에서 동기간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하인가?
	②-2 중기가용 자산규모의 적정성	i. 기금이 중기가용자산을 적정규모만큼 보유하고 있는가?

5. 평가 대상기금

○ (기금존치평가부문) 총 67개 기금 중 19개 기금에 대하여 평가함.

-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일부 평가 실익이 없는 기금*은 해당 지표에 대해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군인연금기금

〈'25 기금존치평가 대상기금 : 19개〉

유 형	기 금 명
존치1팀 (9개)	공무원연금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기후대응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범서비스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존치2팀 (10개)	군인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신용보증기금, 양성평등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II. 2025년 기금존치평가 평가결과 종합

1. 2025년도 평가 개요 및 특징

-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지표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지표 간소화
 - (현행) 사업설치 목적의 유효성, 사업주체·운영의 적합성, 사업유사성·중복성 평가 → (개선) 사업 내용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평가
- 기금의 설치목적이 명확한 계정성 및 연금성기금에 대해 서면평가만 시행함
 - 평가대상 기금 중 공적자금상환기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은 설치목적이 명확하고 자금관리 이외의 별도의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기금존치평가에 대한 실익이 적어 서면평가만 실시
 - 평가대상기금 19개 중 3개 기금을 제외한 16개 기금에 대해서는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시행

2. 평가 결과

가. 기금존치의 타당성

-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1개 기금 폐지, 3개 기금 조건부존치 권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단년도 예상 수요만큼 일반회계 및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고, 지속적인 수요감소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일반회계 등으로의 이관·수행 및 기금 폐지를 권고
 - 수입 전액 혹은 대부분을 외부재원에 의존하여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재원구조가 비효율적인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다변화 모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존치 권고

나. 재원구조의 적정성

- 제정성 및 연금성 기금은 재원구조의 적정성지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기금에 대해 세부 평가지표인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평가 제외
 - 서면평가만 진행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은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 제외
 - 기금의 재원조달 및 지출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일몰기간까지(2027년) 잔여재산 청산만 남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평가 제외
-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대상 16개 기금 중 14개 기금은 부적정, 2개 기금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 자체수입이 부족하거나 정부전입금 등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원 조성방법이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된 기금은 7개 기금

〈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부적정 기금 〉

◇ 기후대응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 ②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평가 결과 4개 기금은 여유, 9개 기금은 과소한 것으로 평가

- (중기가용자산 여유 기금) 자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권고

〈 중기가용자산 규모 여유 기금 〉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 (중기가용자산 과소 기금) 재원확보 방안 마련, 사업정비를 통한 지출조정, 부채상환 등 권고

— < 중기가용자산 규모 과소 기금 > —

◇ 기후대응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3. 평가 향후 계획

- 본 평가를 통해 제시된 권고 및 지적사항 등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Ⅲ. 2025년 기금별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 가 보 훈 부

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설 치 년 도	1967년	운용개시년도	1967년
주 무 부 처	국가보훈부	기금관리주체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설치 목적이 타당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세부 사업들이 설치 목적과 부합하게 구성 및 운영되고 있고, 타 기금과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경상지출대비 자체수입비중이 9.6%로 미흡한 수준임. 또한 중기가용자산 규모도 적정규모대비 과소한 상태이므로 홍보와 다각화를 통한 친일귀속재산 매각 활성화, 광복회관 관리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기금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본 기금은 1967년 제정된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에 근거해 조성되었으며, 1994년 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세부 사업들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독립 운동 관련 문헌 발간,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 광복회관 관리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 본 기금은 설치 목적이 타당하고 설치 법령 및 추진 근거가 명확하며 세부 사업들도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구성 및 운영되고 있어 기금 존치의 유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본 기금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토지대여료, 토지매각대금 및 분납이자, 국유재산인 광복회관의 건물 임대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자체수입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상 지출 대비 자체 수입 비중이 9.6%로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중기가용자산 규모도 적정규모 대비 과소한 상태이므로 홍보와 다각화를 통한 친일귀속재산 매각 활성화, 광복회관 관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은 2018년부터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해당 사업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면 일반회계 전입금도 증가해 자체 수입 비중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자체 수입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해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독립유공자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금으로 설치 목적 유효하고, 세부 사업도 사업목적과 기금 목적에 부합하게 구성되어 있어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인정됨.
- 본 기금에서 수행 중인 세부 사업인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2) 독립운동관련 문헌 발간, (3)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 (4) 광복회관 관리 등이 모두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독립운동 관련 문헌 발간 지원 및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광복회관 관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 기금과 설치목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금은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경상지출 대비 자체 수입 비중은 9.6%로 미흡한 수준임.
 - 본 기금의 자체 수입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토지대여료, 토지매각대금 및 분납이자, 국유재산인 광복회관의 건물임대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본 기금은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망조위금 등 사업 관련 경상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연평균 86,333백만원의 기금 예산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향후 3년간 증가하여 102,052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 본 기금의 '20년 ~ '27년 누적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46.8%로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평가기준(50%)상 적정함.
 - 다만, 일반회계전입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향후 3년 동안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이 증가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본 기금의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이 평가 기준치에 근접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과소함.
 - 본 기금의 적정기금규모 범위는 322,167백만원 ~ 344,795백만원이며, 순자산 143,648백만원에 유동화불가자산 등 금액 100,106백만원을 제외한 중기가용 자산은 43,542백만원으로 적정 기금규모 범위 최소 금액보다 과소함.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망조위금 지급 사업과 광복회관 건물 관리 사업 등 관련 경상사업비가 지난 5년간 97,561백만원 수준으로 발생하였고 향후 3년간은 평균 115,630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나 자체 수입은 평가대상기간 평균 10,061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중기가용자산규모 과소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임.
-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과소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와 다각화를 통한 친일 귀속재산 매각 활성화, 광복회관 관리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본 기금의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0.4%로 적정함.

국 방 부

2. 군인연금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군인연금법 제47조		
설 치 년 도	1963년	운용개시년도	1963년
주 무 부 처	국방부	기금관리주체	국방부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고유의 준비금으로서 설치근거가 명확하고 설치목적이 유효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존치평가 총평

- 군인연금기금은 「군인연금법」(제47조)에 따라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에 포함(제4장 군인에 대한 규정)되어 처음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1963년 「군인연금법」을 제정하면서 독자적인 법률근거 하에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다. 이때부터 재원은 연금지급을 위한 특별회계(군인연금특별회계)와 연금지급 충당 준비금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나누어 관리되었으나, 2007년부터 기금으로 일원화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본 기금은 군인이 퇴역하거나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제공하는 급여(퇴역연금, 유족연금 등)를 안정적으로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방위에 필요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급여에 사회보험적·생활보장적 성격과 함께 군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보상적 성격의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기금의 규모는 '21년 말 1조 445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었다가 편성예산 초과지출로 기금을 사용하여 '24년 말 현재는 5,861억원으로 축소되었다.

- 본 기금은 국가방위에 성실히 전력을 기울인 군인들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목적은 국가방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유효하다. 다른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를 위해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한 이들에 대한 연금제도이지만 여타 특수직역연금과 대상자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유사·중복성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본 기금은 존치되는 것이 타당하다.

- 본 기금은 군인연금에서 도입 당시(1960년)부터 전투기간의 3배 가산 등 군복무 특수성을 반영한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지출이 증가하여 재원을 충분히 적립하지 못한 채 1973년부터 지금까지 연금재정 부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재정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기여금을 인상하고 연금지급기준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연금부족액은 매년 지급소요의 48.4%에 이르고 있으며, 기금조성액은 연금지급 소요액의 2.4개월분에 불과한 상황이다.

- 최근 3년간 기금사용액이 5,234억원에 이르고 있어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예산 부족 배정, 편성예산 초과 지출, 작전 및 재난 사고 등으로 지급 소요 과다발생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책임준비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경우 국가에서 다음다음 연도에 보전금으로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군인연금법」 제48조 제4항)하여 기금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도 아니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군인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유효함.
- 퇴직 또는 사망한 군인 본인과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목숨을 담보로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특수한 임무 수행을 보상하는 군인연금제도는 국가 방위를 위해 그 타당성이 인정됨.
- 군인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급여 지급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의 적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전히 유효함.
- 다만, 최근 3년간의 기금사용액이 '24년 말 현재 기금의 규모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인 제도운용을 위해 기금의 규모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비록 기금에서 사용한 책임준비금에 대해 국가에서 차차년도 보전금으로 다시 적립하는 구조이지만 기금 조성액이 연금지급 소요액의 2.4개월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급작스러운 지급소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더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국 토 교 통 부

3.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1		
설 치 년 도	2016년	운용개시년도	2017년
주 무 부 처	국토교통부	기금관리주체	국토교통부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이 기금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보장하지 않는 각종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기금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며, 다른 기금과의 유사 중복성이 확인되지 않아 기금의 존치가 타당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이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 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 비중과 정부출연금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나 중기가용자산 규모가 과다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계획과 같이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적정규모의 중기가용자산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3. 존치평가 총평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피해 중 민간보험의 영역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의 빠른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용하는 기금이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9조의11)에 따라 1978년부터 시작된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을 점차 확장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기금으로 편입되면서(2017년) 현재까지 기금 형태로 개편·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책임보험료 0.5%(24년 7월부터 3년간 한시적)를 기금에 대한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 기금은 여섯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즉 이 기금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무보험전산망 사업과 자동차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그 가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돕는 피해자 지원사업, 무보험·뺑소니·차량 낙하물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 사업, 교통사고 부상자에게 집중전문재활치료는 물론이고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립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자동차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유자녀에 대한 생활지원 및 학자금 융자사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운영 지원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 이들 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9조의12)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도 부합한다. 또한, 해당 사업들은 민간보험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공공 부문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이 기금은 매년 안정적인 자체수입으로 자체수입 비중은 적정하나, 지출 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의 규모가 커 중기가용자산의 규모가 과다하다. 단기적으로는 공자기금예탁, 부담금 요율 일시 감면 등의 계획을 수행 중이나, 중장기적으로 적정 규모의 중기가용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이 기금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서 일정액의 분담금을 징수하여 자동차 사고 중 민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해에 대하여 보장함으로써 자동차 사고 보험을 확대,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사고 피해보장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시키는 공공성이 인정되는바 기금의 존치가 타당하다.

- 이 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과 궁극적인 방향성을 고려할 때 불법차량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지원과 더불어 이러한 사고를 사전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도 요구된다. 또한, 불법차량에 의한 자동차 사고의 감소 추세로 볼 때 기금의 사업 규모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기금 분담금의 부담률이나 피해자별 지원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이 기금은 자동차 사고 중 민간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고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민간영역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에 중복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민간영역에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고에 대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공익목적이 명확함.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를 효율화하면서 점차 무보험 차량이 줄어들 수 있겠으나, 무보험·뺑소니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기금의 목적은 유효함.
- 다만, 이 기금의 사업들이 피해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데에 반해 사전적으로 피해 예방과 관련한 사업은 의무보험전산망 사업과 피해자지원 사업 중 일부만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홍보나 교육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사업에 대한 향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또한, 불법차량에 의한 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한다면 분담금의 부담률이나 피해자별 지원금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함.
- 이 기금의 중기 운용계획도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기금의 원래 설치 목적에 일관성 있게 부합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민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각종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유일한 기금으로 확인되어 타 기금과의 유사 중복성은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 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비중도 221.6%로 적정함.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과 기타경상이전수입(정부보장사업 구상환입액, 생활자금대출 회수금액, 전기위탁사업비 반납액) 등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의 자체수입 비중은 221.6%이며, 과거 5개년 평균 자체수입 비중은 170.8%, 향후 3년 평균 자체수입 비중은 289.2%로 과거 5개년 평균에 비하여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 본 기금은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에 의존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과다함.
- 본 기금의 적정 기금 규모 범위는 47,807백만원에서 58,327백만원까지로 나타나고 순자산 235,295백만원에 유동화불가자산 등 금액 8,208백만원을 제외한 중기가용자산은 227,087백만원으로 적정 기금 규모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 과다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 요율을 감면(1.0%→0.5%)하고 있고 2027년까지 140,000백만원~150,000백만원 수준의 공자예탁규모를 유지할 계획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적정규모의 중기가용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 본 기금의 자산대비 부채 비중은 1.41%로 적정함.

4. 주택도시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와 제3조		
설 치 년 도	1981년	운용개시년도	1981년
주 무 부 처	국토교통부	기금관리주체	국토교통부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근거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과 주거 지원,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 대상이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므로 기금형태로 운영하는 게 타당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이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이 적정함.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택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필요 자금에 대해 대비할 필요성 및 현재 공자예탁규모 등을 고려하면 적정규모에 근접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존치평가 총평

□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 국민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 재원을 확대하고,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설치(법률 제3420호, 1981.4.7., 일부개정), 운영되어 오다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사회적 요청과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1.6., 제정)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되었다. 이 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종합저축, 융자원리금 회수, 복권기금전입금과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자와 국민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주택 건설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기금자원을 통해 주택 수급을 조절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고, 주택자금대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금에 따른 주요 사업은 주택건설 공급자 지원,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등 수요자 지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성된다. 즉, 영구임대주택건설, 국민임대주택건설, 공공임대주택건설, 행복주택건설, 통합공공임대주택건설 자금 지원 등 공공주택 공급사업과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대출 지원 등 수요자 융자지원 사업, 그리고 대규모 도시재생 복합사업을 위한 출·융자, 노후산단 내 입주기업의 투자와 재정비를 위한 융자, 주택정비사업 추진비 융자, 쇠퇴지역 내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비용 융자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분류된다.

□ 본 기금은 임대주택건설 자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들과 저소득층 주택수요자에게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기금을 지원하여 주택수급을 조절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고, 주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주거수준을 향상하며,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기능증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복지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사업 대상의 특성상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여 기금 형태의 사업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및 복권기금전입금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 정부출연금 및 차입금 비중이 적정하다. 자산대비 부채비중은 83.1%로 높게 나타나지만, 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채무 불이행위험 및 재원구조 문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기가용자산은 청약저축 예수금, 국채 및 관련 부채들이 중기가용자산 계산 시 포함되어 산정됨에 따라 규모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청약저축 예수금 등 기금에서 상환 시점을 정할 수 없는 대규모 자금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고, 기금 주요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므로 향후 수입·지출 변동성 모니터링을 통해 미래 자금흐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미 약 14조원가량의 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적정규모에 근접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본 기금의 목적인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통해 주거복지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주택 등의 공급 지원, 수요자 용자 지원 등의 사업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절과 저소득층과 생애주기 상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경제적 변동성과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대상의 특성상 타 기금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

□ 본 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중소형 분양주택 건설을 지원하며 다양한 형태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고 저리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며 주택의 질적 향상과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안정 강화와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역할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거격차를 완화하며,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고, 도시재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향후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위한 법, 제도 마련, 재원 마련 등의 정책적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1981년 주택건설의 확대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설치, 운용되다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맞춰 양적 공급의 확대와 건설임대 중심에서 주거복지의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의 지원을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금의 목적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의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생애주기상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광의의 주거환경 개선 관련 사업 등의 목적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 이 기금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거복지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민간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어려운 공익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막대한 재원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필요로 하므로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이 타당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 이 기금에 따른 사업은 사업 대상의 특성상 다른 기금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으며 기금의 독립적 운용과 유지가 필요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비중도 102.6%로 적정함.
- 본 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민간예수금), 융자원리금 상환금액, 이자 수입 등의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의 자체수입비중은 102.6%이며, 과거 5개년 평균 자체수입비중은 104.8%, 향후 3년 평균 자체수입비중은 99.1%로 과거 5개년 평균에 비하여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나 적정 수준 이상임.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4.6%로 적정함.
- 본 기금은 차입금이 없고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내용) 및 복권기금 전입금(공익사업전입금), 계정간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수입 대비 비중이 4.6%로 적정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여유가 있음.
- 본 기금의 적정기금규모 범위는 24,660,287백만원에서 51,606,005백만원까지로 나타나고 순자산 38,091,808백만원에 유동화불가자산 및 단기상환불요부채 등 금액 27,429,578백만원을 반영한 중기가용자산은 65,521,386백만원으로 적정 기금규모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본 기금 사업은 경제적 변동성과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청약저축 예수금은 기금이 상환 시점을 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지출의 변동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향후 자금 변동에 대비

할 필요가 있는 점, 2024년말 기준 공자기금에 14,187,862백만원을 예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 규모에 근접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기금의 자산대비 부채 비중은 83.1%로 기준치인 50%를 초과하나 이는 국민 주택채권 발행, 청약저축 예수 등에 의한 것이며 채권 발행 및 청약저축 예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 위험은 높지 않으며, 자본잠식 및 과도한 이자비용 등 재원구조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금 융 위 원 회

5. 공적자금상환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제1항		
설 치 년 도	2003년	운용개시년도	2003년
주 무 부 처	금융위원회	기금관리주체	금융위원회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설치 목적과 용도가 명확한 기금으로, 정해진 존속 기간인 2027년까지 기금 형태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존치평가 총평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제1항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외환위기 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부담한 공적자금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손실액에서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원금기준)에 해당하는 자금의 출연 및 원활한 상환을 위해 2027년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기금이다. 기금은 일반회계출연금,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부실채권 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정산하여 돌려받은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사업의 2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 본 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2개 단위사업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대규모 국채 발행 자금을 상환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 본 기금은 공적자금 부채를 효율적으로 상환하여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금 설치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여 정해진 존속 기간인 2027년까지 기금 형태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향후 3년간('25~'27년) 공적자금 부채상환이 차질없이 완료되어 기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Ⅰ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 49조원(원금 기준)의 원활한 상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적자금상환 기금법」에서 정한 존속 기간(~2027년)에 맞춰 부채 상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 시점에서도 기금의 목적이 유효함.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안정적인 청산을 위해 일반적인 재정 활동과 분리된 별도의 기금 형태로 운영될 필요성이 인정됨.
- 본 기금의 세부사업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과 공공자금관리 기금 예수이자상환 사업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중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원금(49조원)과 이자(70.8조원)를 상환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2개 사업 모두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 본 기금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부채를 효율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정성 기금으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금은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㉔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설 치 년 도	1971년	운용개시년도	1972년
주 무 부 처	금융위원회	기금관리주체	농협중앙회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취약한 담보력을 보완하고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금 목적의 유효성이 인정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자체수입비중은 122.69%로 적정하며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4.13%로 적정함. 중기가용자산규모는 다소 과소한 상태이지만, 향후 정부출연금 전입으로 기본재산이 확충된다면 중기가용자산의 과소 상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 됨.

3. 존치평가 총평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 조달여건을 개선하고, 농림수산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1년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본 기금은 농림수산업 사업자금의 원활한 융자 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증, 우대보증, 특례보증 등을 추진하고 있고, 대위변제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손위험 해소 및 자금고정화 방지 등을 위해 구상권관리비, 농신보IT유지비, 보증료환급, 대위변제금, 위탁사업비 등 5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 설립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83조 9,272억원의 보증지원과 9조 9,843억원의 대위변제를 수행하였다.

- 본 기금은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취약한 담보력을 보완하고 사업자금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상기후·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기 극복과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 및 혁신에도 지원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바 기금의 목적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금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운용배수 관리 및 대위변제 규모 감축 노력과 동시에 경기침체 등으로 담보능력이 떨어진 농림수산업자의 자금 조달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보증사업의 정책자금 연계와 신설 기준 등에 대한 제도화된 관리체계 마련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본 기금은 설립목적과 핵심 지원 대상 측면에서 타 기금과 차별성을 지니나, 동일인 보증한도 초과자에 대한 예외 운용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타 기금과의 유사·중복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비중은 122.69%로 적정하다. 본 기금의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4.13%로 적정하고 차입금은 없다. 본 기금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2.91%로 높지 않으며, 총부채 중 93.20%가 충당부채로 채무불이행위험은 낮다. 하지만, 본 기금의 경상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특별회계전입금을 지속적으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적정규모 보다 다소 과소한 상태이다. 사업정비를 통한 지출을 조정하여 적정 규모의 중기가용자산 규모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 본 기금은 농림수산업자의 경쟁력 제고 및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금으로 인정되며, 특히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림수산업자의 여건을 고려하면 기금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기금존치의 타당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운용배수 관리 노력 등 기금의 건전성 관리방안, 담보능력이 부족해진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증지원 방안, 정부의 정책자금과 연계한 기금 보증사업의 적정 지원 및 관리방안, 신규 보증사업의 신설 절차 및 기준 마련, 예외보증 적용 및 기간 연장의 엄격한 관리,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 선별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취약한 담보력을 보완하고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상기후·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기 극복과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 및 혁신에도 지원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바 기금의 목적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 농림수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기후변화와 생산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급변하는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농림수산업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 하더라도 본 기금목적의 유효성이 인정됨
- 다만,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소요자금을 원활히 마련 하도록 하는 기금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운용배수 관리 및 대위변제 규모 감축 노력과 동시에 경기침체 등으로 담보능력이 떨어진 농림 수산업자의 자금 조달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보증사업의 정책자금 연계와 신설 기준 등에 대한 제도화된 관리체계가 수반되어야 함
- 본 기금은 '19년부터 적정 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하고 있고, '24년말 17.3배로 법정 운용배수(20배)에 근접하고 있어 안정적인 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운용배수 관리 노력 등 기금의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건전보증 및 대위변제 규모 증가, 관리대상 구상채권 잔액 증가 및 회수액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금융여건 악화 및 지속된 경기침체로 담보능력이 미약해진 농림수산업자에게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실효적인 보증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기금이 적정 운용배수를 초과한 이후에도 정부 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라 보증 대상자 및 한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기금의 건전성이 위협 받는 상황으로, 기금의 보증사업과 정부의 정책자금 간에 역할과 지원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일반보증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예외보증의 보증대상자금 대다수가 정책자금이라는 점에서 보증지원의 규모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정책자금에 대한 기금의 보증지원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본 기금의 수입·지출에 보증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신규 보증사업이 언제, 어떤 기준에 의해 신설되는지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에 신용보증 사업계획이 작성되고 있어서¹⁾, 재정당국에서 기금운용계획에 연동된 보증사업의 적정 규모를 사전에 점검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려되므로, 신규 보증사업의 신설 절차와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신용보증 사업계획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작성되도록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기금은 적정 운용배수(12.5배)가 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인의 일반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예외보증을 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²⁾, 기금 운용배수가 증가하고 기금 건전성이 저해되는 상황에서 현재 14개의 보증사업이 예외 한도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외보증 적용 및 기한 연장 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본 기금은 직접보증(관리기관)과 위탁보증(금융기관) 방식으로 운영되며, '24년 기준으로 위탁보증 비율이 23.2%(신규 승낙 기준), 29.5%(승낙잔액 기준)로 적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보증의 위탁 금융기관으로서 농협 및 수협

1) 「신용보증심의회규정」(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규정)

제5조제5조(의결사항) ①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령 개정에 의한 제규정의 자동적 변경은 제외한다.

3. 신용보증사업계획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보고사항) 다음 사항은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신용보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2) 동일인의 보증한도는 개인 15억원(법인 20억원)이나, 보증한도 예외의 경우 개인 30억원(법인 70억원)임

단위조합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및 비효율성 우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임

* 현재, 기금은 부분보증, 취급제한, 위탁계약, 보증 건전성평가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위탁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등에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한편, 위탁보증의 범위는 일반보증 및 경영회생특례보증 5천만원 이하 등의 소규모 보증 지원으로서, 해당 구간의 보증료율이 가장 낮은 만큼³⁾ 위탁수수료율(위탁보증 10%, 직접 보증 5%) 및 위탁사업비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농림수산물을 유통·가공·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대상 및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 본 기금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중복성 또는 유사성 문제가 일부 제기될 수 있으나, 설립목적과 핵심 지원대상에서 차별성을 지님

- 일부 보증대상자 및 보증대상자금이 유사하나, 타 기금에서는 농림수산업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기술평가로 농어업분야 보증지원이 미흡하며,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 산정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차감하여 지원하고 있음

- 다만, 동일인 보증한도 초과자에 대한 예외 운용 규정이 있다는 점과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려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 ·

3) 보증료 1억원 이하 구간에서 보증료율이 0.3%~0.4%로 가장 낮음

4) 「신용보증규정」 제15조의2(동일인 보증한도 초과자에 대한 예외 운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이미 발생된 신용보증의 기한연기

2. 이미 발생된 동일 피보증인의 보증부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 그 보증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보증

중복성 우려가 있는 타 기금과 업무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법정부담금, 보증료 수입, 구상채권회수 및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자체 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의 자체수입비중은 122.69%로 적정함(과거 5개년 및 향후 3개년 평균).
 - 과거 5개년 자체수입비중의 평균은 150.62%이며 향후 3개년 자체수입비중의 평균은 93.80%로 감소하는 하였음. 2020년과 2021년 공자기금예탁원금 회수 1,100,000백만원에 기인한 것으로 경상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본 기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정부출연금과 자체수입 등으로 조성된 기금재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 및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수입재원과 기금사업 간의 직접적 연계성이 있음.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의 평균은 4.13%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적정하며(과거 5개년 및 향후 3개년) 차입금은 없음.
 - 과거 5년 및 향후 3개년 동안(2023년 제외) 특별회계전입금을 총 640,000백만 원을 출연 받아 기금의 경상지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적정규모 보다 다소 과소한 상태임.
 -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710,334백만원으로 적정규모 최소기준 1,482,801백만원과 최대기준 2,202,452백만원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상태임. 특별회계전입금을

확보하여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경상지출의 증가로 중
기가용자산은 과소한 상태임.

- 본 기금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2.91%로 높지 않으며, 총부채 중 93.20%가
충당부채로 구성되어 채무불이행위험은 낮음.

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		
설 치 년 도	1985년	운용개시년도	1986년
주 무 부 처	금융위원회	기금관리주체	금융위원회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한국은행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폐지	현재 기금의 운용방식으로는 농어민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 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이라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며, 기금운용방식의 개편으로 해결이 불가한 경우, 농어가목돈장려저축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수행 및 기금 폐지를 권고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본 기금은 한국은행 출연이라는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비중이 49.99%로 미흡하며, 실질적인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도 높음. 재원과 목적사업과의 연관성이 부족함. 단년도 예산으로 단년도 지출을 하는 기금으로 중기가용자산이 없어 기금으로서의 존치실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3. 존치평가 총평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산·축산 자금의 공급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1976년부터 시행하여 오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를 1985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로 입법화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기금은 정부출연금과 한국은행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저축 가입자에게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이자 외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986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조 7,239억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3조 7,231억원을 지출하였고, 2024년말 현재 저축가입 농어민은 계좌기준으로 212,041명이고, 불입액은 1조 1,542억원이다.
- 현재의 기금 운용방식으로는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며 농·수산·축산 자금의 공급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농어민 저축 장려 및 재산 형성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부재하고 사업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기금 목적의 유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 본 기금은 정부에서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전입금과 한국은행의 출연금(각 50%씩)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자체수입비중은 49.99%로 미흡하며 외부재원의 의존도는 49.40%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외부의존도는 높다고 판단된다. 한국은행 출연금과 목적사업간의 연계성도 낮다. 당해연도 예산으로 이를 모두 지출하는 기금으로 중기가용자산이 과소하여 기금으로서의 존치 실익이 부족하다.
- 과거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회 예·결산심사 등에서도 기금 목적의 유효성을 낮게 평가하고 기금 폐지 및 일반회계 사업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간에 재원조달 및 소관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이라는 특수한 정책 목적을 고려할 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사업의 추진은 필요한 상황이며, 본 기금을 통해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기금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다면, 농어가목돈장려저축 사업의 일반회계 등으로 이관하여 수행하고 기금 폐지를 권고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목적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며 농·수산·축산 자금의 공급재원을 확대하는 것이나, 현재의 기금 운용방식으로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부재하고 사업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기금 목적의 유효성이 낮다고 판단됨
- 과거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회 예·결산심사 등에서도 기금 목적의 유효성이 낮게 평가되며, 기금 폐지 및 일반회계 사업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간 협의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과거 기금존치평가 결과 >

연도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2022	폐지	본 기금은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이라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 기금이 추구하는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대안들을 찾을 수 있으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만기 시점에 맞추어 폐지 할 것을 권고함. 특수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 본 사업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므로 기금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2019	폐지 (일몰)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이라는 기금의 목적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만기를 고려하여 폐지(일몰)를 권고함.
2018	조건부 존치	본 기금은 농어가 재산형성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폐지를 권유하는 것이 타당하나, 저소득 농어민 중심으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전제하에 조건부존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재정지원규모의 단계적 감축 등을 권고함.

자료: 각 연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 최근 국회 결산 심사보고서 〉

회계연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농어가목돈장려저축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및 기금 폐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재원 조달 방안과 수행기관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등에 대하여 조속히 결정할 것(제도개선)
2022	저축장려금 사업의 일반회계 편입 방안을 비롯하여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 기금 재원 조성방안 개편, 운용주체 변경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주의)

자료: 각 연도 국회 결산 심사보고서

〈 관계기관 의견 〉

기관	주요 내용
금융위	• 기금 폐지 및 일반회계 이관
농식품부	• 제도개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나, 이관될 경우 예산, 위탁기관 등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해수부	• 일반회계 전환 및 소관부처 이관에 동의
기재부	• 일반회계 전환에도 한국은행 출연금 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
한은	• 한국은행의 출연금 유지에 부정적

자료: 금융위원회

- 본 기금의 농어민 저축 장려 및 재산 형성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에 가입 계좌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보아 기금의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15~2023년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현황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가입자수 (계좌 수 기준, 천좌)	346	317	296	274	277	267	253	235	222	212
전체 농어민 가구수 ^{주)} (천가구)	1,234	1,208	1,179	1,154	1,138	1,182	1,178	1,166	1,140	-
가입률(%)	28.1	26.3	25.1	23.9	24.3	22.6	21.5	20.1	19.5	-

주: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기준('23말까지 발표)

자료: 금융위원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부터 저축 가입대상을 영세 농어민으로 명시하고 있으며⁵⁾, 최근 농어민의 소득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 농어민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나, 일반 농어민 가입자 비율* 및 저소득 농어민 기준**을 살펴볼 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일부 있음

〈 최근 5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소득 농어민 가입비율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저소득 농어민 가입비율(%)	계좌 수	85.8	86.6	87.2	88.3	91.5
	불입액	84.3	85.6	86.6	87.2	89.2

자료: 금융위원회

* '24년말 기준 일반 농어민 가입자 비율은 10% 내외 수준임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을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는데, 농어민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를 저소득층으로 봐야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 기금 및 장려금 사업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부재하고, 저소득 농어민의 저축 장려를 위한 기금운용주체의 노력과 사업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기금 목적의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저축장려금 사업의 담당 기관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저축 장려를 위한 홍보, 가입실적 제고 활동, 부정수급 관리 등에 관한 기금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기금운영비도 '25년 1백만원 편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금운용주체의 사업관리 및 지원활동 실적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인데(「국가재정법」 제5조), 본 기금은 그 운영방식이 당해연도 수입으로 집행하면서 매해 연말잔액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이므로, 현재와 같이 단년도 사업추진방식이 유지되는 경우 기금으로 존재할 실익이 크지 않음

* 기금의 재원인 한국은행 출연금과 지출사업인 농어민 저축장려금과의 연계성이 낮아 기금 운용에 적합한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법률 제3797호, 1985. 12. 23., 제정]의 제정·개정이유

○ 다만,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할 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사업의 추진은 필요해 보이며, 본 기금을 통해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금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거 기금존치평가 및 국회 예·결산 심사에서 동 기금의 폐지 및 일반회계 사업 등으로의 전환을 권고하였으나, 관련 부처간에 재원조달 및 소관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저축 장려금 불입액('24년 기준 1조 1,542억원)을 단계적으로 본 기금의 재원으로 이관하여 단년도 사업추진방식에서 중장기 신축적인 기금 운용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재원과 지출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2015~2024년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불입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불입액	11,177	10,037	9,587	9,507	10,319	11,588	12,949	12,903	12,869	11,542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불입액을 기금운용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저축기관의 이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저축금과 같이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저축기관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농·수산물·축산 자금으로 운용하면서 얻는 효익이 있음에도 본 기금에 대한 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기금으로 하여금 저축기관이 이자의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매년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농어가저축법 제13조)⁶⁾,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의 기본금리가 일반금리 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대한 저축기관의 수입금 환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⁷⁾

- 저축 유인 제고 및 실효적인 사업관리 등을 통해 저소득 농어민의 저축을 장려하고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 효과를 높여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1986~1988년에 73억원의 손실보전금이 발생함

7) 일례로 '22년말 본 저축 기본금리는 2.91%, 농협의 일반금리는 5.30%로 확인됨

- * 저소득 농어민 기준 요건 강화, 지원대상을 저소득 농어민으로 한정, 가입한도 현실화, 단기 저축 상품을 선호하는 고령자와 저소득 농어민의 니즈에 맞게 만기 다양화 등
- * 궁극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의 관리주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 저축장려금을 통해서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려는 본 기금의 설치목적과 중복되거나,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이 유사한 타 기금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과거 기금존치평가에서도 타 기금과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법률에 의한 자체수입재원(한국은행출연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상 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은 49.99%로 미흡함.
 - 정부에서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1/2을 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1/2은 한국은행이 출연함.
 - 그러나 사업과 자체수입(한국은행출연금)간의 연계성이 매우 낮아 이를 자체 수입으로 분류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과거 5개년 및 향후 3개년 평균 49.40%로 적절함.
 -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인하여 50%에 미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일반회계)가 1대1로 매칭하여 출연하기 때문에 정부내부 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높다고 볼 수 있음.
-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이 낮음.
 - 본 기금은 한국은행의 출연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이 기금의 재원으로 농어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입재원과 기금사업 간의 직접적 연계성이 없으며, 원인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규모보다 과소함.
 - 중기가용자산은 7백만원으로 적정규모 최소기준 71,930백만원과 최대기준 82,233백만원의 범위에 미달하여 과소함.
 - 본 기금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이를 모두 지출하는 기금으로 중기가용자산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기금으로서의 존치 실익이 부족함.

8. 신용보증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설 치 년 도	1976년	운용개시년도	1976년
주 무 부 처	금융위원회	기금관리주체	신용보증기금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금유통을 지원함으로써 기금의 설치 목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본 기금의 존치는 타당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이 93.7%로 적정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도 5.6%로 적정함.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보증 공급 및 부실 발생 시점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므로 단기적으로 중기가용자산을 축소하기보다는 향후 대위변제 발생 추이 등에 맞춰 보증공급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법으로 중기가용자산을 관리할 것을 권고함.

3. 존치평가 총평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6년 신용보증기금법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팩토링, 구상권 관리, 경영지도의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효과적인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수행 중인 5개 사업도 모두 기금의 설치목적과 직·간접적으로 부합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존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본 기금은 보증방식의 정책금융 지원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유사성이 있어 보이나 설치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기금은 업무영역 특화를 위한 명확한 역할 분담 원칙 및 기준을 보유함으로써 정부 정책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지원의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인 금융기관출연금, 보증료 수입, 구상채권 회수 및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이 93.7%로 적정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도 5.6%로 적정하다. 그리고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기금규모를 상회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 공급 및 부실 발생 시점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므로 단기적으로 중기가용자산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향후 대위변제 발생 추이 등에 맞춰 보증공급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법으로 중기가용자산을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전히 유효함.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보호 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내수 및 수출의 하방압력으로 경기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금유통을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은 현재 시점에도 유효함.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핵심사업에 집중하여 중장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민간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공급량을 감안한 체계적인 중장기 운용계획의 수립과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보증규모 효율화의 노력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신용보증기금에서 수행 중인 신용보증 사업 등 5개 사업은 모두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직·간접적으로 부합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설치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방식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유사성을 보이나,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제도를 기반으로 신기술사업자의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과 차별화되어 있음.
- 또한, 신용보증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유사성을 보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과 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서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과 차별화되어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복지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상호 협력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복지원 가능성 축소를 위한 노력을 향후에도 지속해야 할 것임.
- 정부 정책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타 기금과의 일부 중복지원이 존재하나 업무 영역 특화를 위한 명확한 역할 분담 원칙과 기준을 보유하고, 타 기금 간 전산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등 중복지원 가능성 축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은 93.7%로 적정함.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인 금융기관출연금, 보증료 수입, 구상채권 회수 및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과거 5년 동안의 자체수입은 연평균 3,006,568백만원이고, 경상지출은 2,652,571백만원으로 자체수입비중은 113.3%에 달했음.
 - 다만, 향후 3년 동안은 보증료 수입과 금융기관 출연금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됨과 동시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종료(2025년 9월)에 맞물려 부실률 상승 및 대위변제 증가가 예상되어 경상지출은 증가될 것으로 추계됨으로써 향후 3년의 자체수입비중은 74.8%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5.6%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적정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은 정부출연금(일반회계전입금)이며 2024년에는 80,000백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였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일시적으로 과다한 상태로 판단됨.
 - 본 기금의 평가대상기간 수지차와 보증잔액 규모를 토대로 산정된 적정기금규모 범위는 7,760,653백만원에서 10,939,496백만원까지이며, 중기가용자산은 11,192,026백만원으로 적정기금규모 범위 최대치의 102.3%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본 기금이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 동안 정부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자체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위 보증에 대한 부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 경상지출은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남으로써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되며, 대규모 보증공급과 부실 증가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기가용자산 과다 상태를 즉시 해소하기보다는 대위변제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보증공급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할 것을 권고함.
- 본 기금의 2024년말 현재 부채/자산 비율은 22.7%로 기준치(50%) 대비 적정함.

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설 치 년 도	2003년	운용개시년도	2003년
주 무 부 처	금융위원회	기금관리주체	예금보험공사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의 재정 출연 원천이었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잔존 규모와 금융시장 안정 및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정책과제를 고려할 때 설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며, 수행 중인 세부사업의 정합성과 타 기금과의 명확한 기능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금 존치가 타당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적정	자체수입비중은 18,856%로 적정함. 외부재원이 존재하지 않아 차입금 및 정부내부수입 비중도 0%로 적정함. 2027년 기금사업 종료 후 잔여 재산의 구체적인 처리 방안 수립이 필요함.

3. 존치평가 총평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에 근거하여 2003년 예금보험공사 내에 설치된 특수목적기금으로, 2002년 말까지 발생한 공적자금 부채(82.4조원)를 상환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자금상환대책의 일환이며, 금융권 특별기여금과 재정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부채 상환 및 공적자금 회수를 전담하는 2027년까지의 법정 존속기간을 가지는 한시적 구조조정 지원 기금이다.
- 본 기금이 부담하는 부채를 2021년 전액 상환하는 등 현재까지 상당한 상환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잔존 부채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과제를 고려할 때 설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고, 기금이 수행 중인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사업과 금융구조조정지원사업 등 2개 세부사업은 모두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예금보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금융위원회 소관 타 기금과는 시기, 기능, 운용 방식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중복성이나 유사성 없이 고유한 역할을 지속 수행 중이다.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법정출연금, 부보금융회사의 특별기여금, 보유자산 매각수입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7년 말로 예정되어 있어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자체수입비중은 18,855.96%로 적정하며, 외부재원이 존재하지 않아 차입금 및 정부내부수입 비중도 0%로 적정하다.
- 기금의 법정 존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보유지분의 효율적 매각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기금 종료 후 잔여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2025년 현재에도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국가 전체적인 공적자금의 회수와 부채 상환이라는 과업이 아직 완결되지 않아 금융시장 안정과 수혜자 부담 원칙 실현을 위해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음.
- 2002년 말까지 발생한 공적자금 부채를 별도 기금으로 분리·관리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상환을 추진하였고, 금융회사의 특별 기여금과 자산회수 등을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본 기금이 부담하는 부채를 2021년 전액 상환하는 등 당초 설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함.
- 2027년까지의 법정 존속기간 내 보유 자산 회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2024년 말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 잔존 부채 21조 원의 상환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서 기금 유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금융구조조정 체계 내에서 최종 정리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책적 안정장치로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금 존치의 타당성이 있음.
- 다만, 존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유지분의 효율적 매각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기금 종료 후 잔여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 있음.
- 본 기금에서 수행 중인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사업 및 금융구조조정지원사업 등 2개 세부사업은 모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함.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사업은 과거 공적자금 출연에 대한 반환 성격으로, 공적자금 부채 상환이라는 기금 본연의 목적에 직접 연계되고, 회수자금 및 특별 기여금을 활용한 조기 전출은 공적자금 회수와 국민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함.

- 금융구조조정지원사업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사후관리, 소송비용 및 보유자산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와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활동으로, 기금의 핵심 설치 목적과 정합성이 높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이 없음.
- 본 기금은 동일한 금융위원회 소관의 예금보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목적, 재원, 운용 범위가 명확히 구분됨.
-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이후 신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 보호 및 정리를 위한 기금으로 본 기금과 시기적으로도 기능이 분리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 ·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자산 중심의 정리 방식이라는 점에서 부채 상환 중심의 본 기금과 차별화됨.
- 세 기금은 IMF 외환위기 전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 되었으며,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달라 중복성 · 유사성이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법정출연금, 부보금융회사가 지급하는 특별기여금, 보유자산 매각수입 등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은 18,855.96%로 적정함.(과거 5개년 및 향후 3개년 평균)
 - 과거 5개년 자체수입비중은 11,213.05%이고 향후 3개년의 자체수입 비중은 75,175.97%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 법정부담금이 71.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 매각대금은 19.11%를 차지하고 있음. 기금의 존속시한이 2027년 말로 2025년 ~ 2027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을 모두 매각할 예정으로 향후 3개년의 자산 매각대금의 비율이 30.91%까지 증가함.
- 법정출연금, 부보금융회사가 지급하는 특별기여금, 보유자산 매각수입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공적자금상환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수입재원과 기금사업의 연계성이 있음.
- 차입금 및 정부내부수입이 존재하지 않아 적정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1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설 치 년 도	1987년	운용개시년도	1988년
주 무 부 처	금융위원회	기금관리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현재 운용 중인 사업이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다른 기금과의 중복성이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적정	자체수입비중은 196.53%로 적정함.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이 없어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적정함. 중기가용자산규모는 역시 적정함.

3. 존치평가 총평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기초하여 1998년부터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본 기금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여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은 크게 주택금융신용보증 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업을 수행 중이다.
- 본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두 사업의 법적 근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에서 제시되어 있다. 신용보증 업무는 제22조 7항을 그리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제22조 9항을 근거로 한다. 경기침체 및 금리 변동성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높고 고령층 자산구조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경제·사회 여건상 두 사업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의 공공성 또한 경제·사회 여건상 충분하기에 본 기금의 존치는 타당하다.
- 본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금융기관의 법정출연금, 보증료수입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비중은 196.53%로 적정하다. 본 기금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9.05%로 차입부채가 없어 재무구조가 건전한 상태이며 중기가용자산규모 역시 적정하다.
- 현재 운용 중인 두 사업은 사업 내용이 기금 설립 목적에 맞으며 재원 구조 또한 적절하여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의 운용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업의 경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을 기금이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라는 기금 설치 목적은 현재 경제·사회 여건상 타당성이 인정됨.
 - 주택금융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과제는 시장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이 높은 현재 경제 구조상 공적 부문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금리 상승기에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 또한 공적부문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공사비가 급등하고 분양시장 또한 침체되어 민간부문의 부동산공급이 크게 침체되어 있음.
- 본 기금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은 모두 위의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단기적으로 현재의 운용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주택금융신용보증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7항을 근거로 함.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9항을 근거로 함.
 - 세부적인 사업 내용 또한 관련 법의 설치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함.
 -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업의 경우 고령가구 자산구성과 부동산시장 가격 분포가 과거와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어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 타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본 기금은 주택금융신용보증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타 기금과 설립목적 및 정책 대상 측면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법정출연금, 보증료수입과 구상채권 회수 및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은 196.53%로 적정함.(과거 5개년 및 향후 3개년 평균)
 - 과거 5개년 자체수입비중은 278.27%이고 향후 3개년의 자체수입 비중은 143.09%로 자체수입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 적극적인 기금의 지원을 통한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지출을 향후 1.6조원까지 증가시킴에 따라 향후 3개년의 자체수입 비중은 과거 5개년 대비 감소함.
- 금융기관 출연금, 보증료, 구상채권의 회수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서민층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수입재원과 기금사업의 연계성이 있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9.05%로 낮으며, 차입부채가 없어 채무불이행 위험은 낮음.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적정함.
 -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11,908,828백만원으로 적정규모 최소기준 10,924,888백만원과 최대기준 16,642,324백만원의 범위에 있어 적정함.

기 획 재 정 부

11. 기후대응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1항		
설 치 년 도	2022년	운용개시년도	2022년
주 무 부 처	기획재정부	기금관리주체	기획재정부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한국환경공단 기후대응기금센터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기후대응기금은 설치 목적과 용도가 명확한 기금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설치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 중복성 완화, 평가지표 개선, 재원조달 방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기금운용을 내실화할 것을 권고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64.36%로 미흡한 수준임.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36.43%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적정함. 부채비율은 94.74%로 높은 수준임.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규모에 비해 과소한 상태임. 기금의 운영 초기 단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정립, 자체 수입의 발굴 및 제도적 개선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중기가용자산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존치평가 총평

-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근거하여 2022년 설치되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매각대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등 자체수입과 기타 재산 수입 및 타기금 전입금이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관리한다.
- 본 기금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한 산업, 노동, 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교육·홍보, 국제협력 등의 영역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지녔다는 점이 인정되며, 본 기금의 일부 목적과 중복되는 목적을 가진 타 기금이 존재하나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 재원으로서 기금은 본 기금이 유일하므로 기금 목적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기금은 4대 핵심분야에서 총 13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은 대체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사업의 평가지표가 사업 수행의 진척도를 평가하는 측면에 치우쳐 있어, 실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 수행이 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등 새로운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금 내 각각 다른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간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부처간 협의 절차를 통해 중복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유사 기금과의 중복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 역시 기금 내 중복성 배제 절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의 수입 중 자체수입 비중은 64.36%로 미흡한 수준이며, 차입금 및 정부 내부수입비중은 36.43%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적절한 수준이다. 중기가용 자산은 최저수준이 2,130,597백만원에 미달하는 522,118백만원으로 과소하다. 본 기금이 설립된 이후 3년밖에 소요되지 않아 초기 많은 비용을 외부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부채비율이 94.74%로 높은 상태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주력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립 및 기존 사업의 통폐합, 자체수입원에 대한 모색 및 기존 자체수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중기가용자산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설치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며 타 기금과의 유사성·중복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후대응기금의 존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금 설치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 중복성 완화, 평가지표 개선, 자체수입원 발굴, 부채비율 관리 강화 등의 개선을 통해 기금운용을 내실화할 것을 권고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므로 동 목적을 위해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은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하며 존치가 타당함.
- 파리협정 이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 NDC를 달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명문화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2025년 중 2035 NDC 제출, 온실가스 감축 장기 비전 마련,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 국가 차원의 새로운 기후대응 목표가 세워질 예정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역할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됨.
-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69조에 따라 2022년 설치되어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구축”의 4대 핵심분야와 연관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므로 그 설치 목적과 용도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기금에서 수행 중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등 136개 사업은 모두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나, 사업 배분, 분류, 평가 등에서 개선 가능한 영역이 존재함.
- 현재 4대 핵심 분야 예산을 보면, 24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 8,764억원, 저탄소 생태계 조성 6,183억원, 공정한 전환 1,879억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4,774억원으로 분야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업 시행자 수요 중심의 자원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에 따른

사업의 적정 배분을 위해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기금의 사업 중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1. 기재부, 5. 산업부, 7. 국토부, 11. 환경부),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2. 산업부, 135. 환경부, 136. 중기부) 등은 동일한 표제 내에 상이한 부처가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로,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중복의 여지가 있음. 다만 협의체 구성, 협업사업 지정을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분류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한 재분류를 검토할 것을 권고함.
- 본 기금 사업의 성과지표 중 상당수가 기금 자체의 목적(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져 있기보다 사업 수행의 진척도(펀드 조성 실적, 타당성 건수, 매출액, 연구시설 가동률)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사업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었는지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같이 사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 본 기금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기반 구축, 공정한 전환 등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치된 유일한 기금으로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타 기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타회계 · 기금과의 지속적인 사업 조정을 통해 중복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평가됨.
-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치된 기금은 본 기금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됨.
- 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타회계 · 기금의 사업을 본 기금으로 편입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을 시 타회계 · 기금으로 사업을 이관하여 기금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있음.
- 다만, 전력산업기반 기금, 과학기술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기후대응기금의 일부 목적과 중복되는 목적을 가진 타 기금이 존재하여

중복성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 강화가 필요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대응 기금과의 협업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함.

- 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과 유사하며, 과학기술 연구개발·인재양성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반 조성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목적과 일부 중복될 여지가 있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현재 각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형태로 자체적인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서울, 경기, 전북, 전남에서 이미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중앙정부의 기후대응기금과 지자체의 기후대응기금 간의 목적과 사업 범위가 다른 것으로 보이나, 중앙정부 기후대응기금 활용시 지역의 설비,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서 지역 기후대응기금과 협업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양 기금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할 것을 권고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의 7%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전입금, 타기금의 전입금 등의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 비중은 64.36%로 미흡한 수준임.
 - 자체수입 중 일반회계전입금(법정배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0.56%(2024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에 따른 수입이 13.78%(2024년)를 차지하고 있음.
 - 과거 3개년 자체수입비중은 58.88%이고 향후 3개년의 자체수입 비중은 69.42%로 자체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자체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유상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선물 ETF, 자산운용사 등의 투자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제도적인 개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본 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의 7%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전입금, 타기금 등의 기금재원으로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수입재원과 기금사이의 연계성이 있음.
- 본 기금 총수입 중 차입금 및 정부내부수입의 비중이 36.43%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적정함.(과거 3개년 및 향후 3개년)
 -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차입금 등)는 과거 3개년 41.90%에서 향후 3개년 31.9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022년 기금이 최초 설립되어 외부의존도가 높았으나, 점점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부채비율은 94.74%로 높음.
 - 2022년 기금이 최초 설립되어 외부재원(차입금)에 의존하여 기금이 운용이 됨. 기금이 설립된 이후 여러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어, 차입금이 증가하는 추세임.
 - 기금 설립되어 초기 단계로 주요한 수입원의 발굴 및 유사한 사업의 통폐합, 주요 사업에 대한 정립을 통해 부채를 감소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규모보다 과소함.
 -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522,118백만원으로 적정규모 최소기준 2,130,597백만원에 미달하여 적정규모보다 과소함.
 - 본 기금은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적정하나, 자체수입보다 경상지출이 과다하여 기금의 적정규모가 과대하게 평가됨.

대 법 원

1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공탁법」 제28조(기금의 설치)		
설 치 년 도	2016년	운용개시년도	2016년
주 무 부 처	대법원	기금관리주체	대법원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설치목적이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기금의 목적은 유효하고, 타 기금과의 유사·중복성도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다만, 세부사업인 ‘사법서비스 향상’의 구체적인 정의와 내역사업 조정이 필요하며, 법무부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해소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 비중과 정부출연금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함. 하지만 중기가용자산규모가 과다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신규사업의 발굴 및 일반회계사업의 이관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중기가용자산 규모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근본적으로 과다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3. 존치평가 총평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공탁법」 제28조(기금의 설치)에 근거하여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에 설치되었다. 본 기금은 공탁금 수익의 일부인 민간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비 지출액은 711억원이다. 본 기금은 「공탁법」 제31조(기금의 용도)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기금의 용도)의 규정에 따라 단위사업인 공탁업무전산화,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을 통해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소송구조 지원, 조정제도 지원,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소년보호 등 지원, 민원서비스 개선, 사법서비스 향상, 국선변호료지원(2025년도 일반회계로부터 이관) 등의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본 기금은 설치목적이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2016년 설치되었으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지속적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세부사업인 ‘사법서비스 향상’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법조윤리회 및 한국법학원 지원’ 사업의 목적은 사법서비스 향상과 직접적 연관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및 ‘사법서비스 향상’ 세부사업은 법무부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성이 있어 사업 조정이 요구된다.
- 본 기금은 매년 안정적인 자체수입으로 인하여 자체수입비중은 적정하고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 역시 적정하다. 자체수입 규모에 비해 지출규모가 작아 중기가용자산의 규모가 과다하다. 여유재원에 대해 공자기금 예탁을 계획을 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일반회계사업의 이관 등을 통하여 적정규모의 중기가용자산의 유지가 필요하며, 좀 더 근본적으로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과다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본 기금은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타 기금과의 타 기금과의 유사·중복성이 없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 다만, 세부사업인 ‘사법서비스 향상’의 구체적인 정의와 내역사업 조정이 필요하며, 법무부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해소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기금의 효과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 간 체계성 및 연계성 강화와 기금 사업 성과지표의 명확한 정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설치목적이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2016년 설치되었으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지속적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전히 유효함.
- 다만, 세부사업인 ‘사법서비스 향상’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기금의 용도)는 「공탁법」 제31조(기금의 용도) 제6호에 따른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사업서비스향상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호의 “사법서비스향상사업”은 「공탁법」 제31조 각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내용적 범위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는 세부사업인 ‘사법서비스 향상’에 포함되는 개별 내역사업의 목적이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세부사업인 ‘사법서비스 향상’의 목적은 현재 내역사업명을 열거하면서 국민의 신뢰받는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은 구체적인 특정 목적에 기반한 사업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사법서비스 향상’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법조윤리회 및 한국법학원 지원’은 사업의 목적 측면에서 사법서비스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은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받는 사법부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법학원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한국법학원 민·상사 법률연구 지원’ 사업을 내용으로 하여 세부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
- ‘법조윤리회 및 한국법학원 지원’사업은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법무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지적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법학원 지원을 사업 내용으로 함.
-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은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에 한국법학원 지원 사업은 사법서비스 향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화하거나 혹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 본 기금은 「공탁법」 제28조(기금의 설치)에 근거하여 사법제도 개선 및 법률구조 등 사법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동 기금의 사업은 동법 제31조(기금의 용도)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기금의 용도)의 규정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타 기금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아님.
- 그러나 본 기금의 세부사업인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과 ‘사법서비스 향상’의 내역 사업은 법무부 예산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원사업’과 법무부 일반회계 세부사업인 ‘법률구조’는 모두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보조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에서 유사성이 있음.

- ‘사법서비스 향상’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사법교육 및 대국민 소통 지원’과 법무부 일반회계 세부사업인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은 모두 청소년·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에서 유사성이 있음.
- 이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목적(「공탁법」 제31조제4호)을 반영하여 법무부 일반회계 세부사업인 ‘법률구조’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교육 사업은 법무부 일반회계 사업과의 조정을 통해 통합적인 사업계획과 관리가 요구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은 공탁금보관은행의 공탁출연금, 변상금, 위약금 및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의 자체수입비중은 172.81%로 적정함(과거 5개년 및 향후 3개년 평균).
 - 과거 5개년 자체수입비중의 평균은 177.05%이며 향후 3개년 자체수입비중의 평균은 168.57%로 자체수입이 경상지출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0%로 적정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적정규모 보다 과다함.
 -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239,797백만원으로 적정규모 최소기준 -127,225백만원과 최대기준 -65,760백만원의 범위보다 과다함.
 - 적정규모가 음수로 나타나는 것은 매년 자체수입이 경상지출을 초과하여 기금이 적립되고 있기 때문임.

문화체육관광부

13. 지역신문발전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설 치 년 도	2005년	운용개시년도	2005년
주 무 부 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금관리주체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조건부준치	언론진흥기금과의 사업 내용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재원 측면에서도 동일한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언론진흥기금과의 유사·중복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 관련 사업은 언론진흥기금의 세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근거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여 차기평가지 까지 지적사항들에 대해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합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준치를 권고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경상지출대비 자체수입비중이 3.4%로 미흡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도 74.7%로 과다함. 또한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기금규모 대비 과소함. 경상지출 전액을 언론진흥기금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기금의 사업을 언론진흥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3. 존치평가 총평

-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기금관리주체)와 한국언론진흥재단(위탁관리기관)이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 개선 지원, 소외계층 구독, 읽기 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 본 기금은 지난 평가에서 사업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체계 구축이 미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새로운 성과지표 2개를 개발하는 등 보완했으나 여전히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전반적인 평가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본 기금은 2022년까지 기금 수입원을 일반회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지난 평가에서 지적받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회계 대신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입금을 받아 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평가에서 언론진흥기금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지적받아 일부 사업들을 폐지하기는 했으나 기금 설치 목적이 지원 대상을 지역신문으로 한정된다는 것 말고는 언론진흥기금 설치 목적과 유사하고 기금 재원도 모두 언론진흥기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존치해야 될 근거가 더욱 희박해졌다. 따라서 본 기금은 폐지하고 본 기금에서 진행하던 지역신문발전 사업은 언론진흥기금의 세부사업으로 편입시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기금의 근거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여 차기평가지 까지 지적사항들에 대해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합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존치를 권고한다.
- 본 기금은 기타이자 및 재산수입, 전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및 불인정액 반납에 따른 금액으로 구성된 자체 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상지출 대비 자체 수입 비중이 3.4%로 미흡하며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도 74.7%로 과다하고 중기가용자산은 적정 기금규모 대비 과소하다. 따라서 본 기금의 재원 구조와 현재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아 기금사업을 수행(2024년 기준 언론진흥기금전입금 8,500백만원, 경상지출액 8,502백만원)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 기금의 사업들을 언론진흥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은 2019년과 2022년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설치 목적의 유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과 평가 체계 구축, 타 기금 (언론진흥기금)과의 유사·중복성을 지적받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존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선이 미흡하고,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 거의 모든 기금수입을 전입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오히려 지역발전기금이 언론진흥기금에 더 종속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기금 존치의 근거가 더 희박해졌다. 따라서 차기평가지 까지 위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론진흥기금에서 본 기금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 개선, 유통구조 개선, 인력 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정보화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지역신문이라는 대상만 다르고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목적과 거의 유사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잡지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이들에 대한 진흥, 인력 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 독자권인 언론 공익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원대상을 지역신문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목적 유사해 지역발전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언론진흥기금 내 세부사업으로 수행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은 지난 평가에서 일반회계에서 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2022년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금의 필요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해당 연구용역이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못함.
- 해당 용역에서 일반회계 전환 불가능 사유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수입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수입원을 통해 기금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므로”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 기금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기금이 수행하는 기능을 통해 기금 유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임” 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본 기금은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능 측면에서 기금유지는 동일한 사업을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일반회계로 전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일반회계 대신 언론진흥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언론진흥기금과의 사업 내용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재원 측면에서도 동일한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언론진흥기금과의 유사·중복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 관련 사업은 언론진흥기금의 세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본 기금을 폐지하고 언론진흥기금에서 본 기금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만, 본 기금의 근거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변경된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여 차기 평가시 까지 언론진흥기금과의 통합을 유예함.
- 차기 평가시 까지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론진흥기금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경상지출대비 자체수입비중은 3.4%로 미흡함.
 - 본 기금의 평가대상기관 자체수입은 연평균 353백만원인데 반해 경상지출은 10,534백만원으로 자체수입비중은 3.4%로 나타남.
 - 본 기금은 기타이자 및 재산수입, 전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및 불인정액 반납에 따른 금액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경상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경상사업비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2023년까지) 및 언론진흥기금 전입금(2023년부터)에 의존하고 있음.
- 본 기금의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74.7%로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과다함.
 - 본 기금의 정부 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언론진흥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대상기간 연평균 10,688백만원이 발생하여 연평균 14,306백만원 발생한 총수입의 74.7%를 차지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과소함.
 - 본 기금의 평가대상기간 순수지차를 토대로 산정된 적정 기금규모 범위는 40,690백만원에서 41,575백만원까지이며, 순자산 4,386백만원에 유동화불가 자산 금액 224백만원을 제외한 중기가용자산은 4,162백만원으로 적정 기금 규모 범위 최소금액보다 과소함.

- 본 기금의 자체 수입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상사업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향후 중기가용자산규모의 과소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기금은 2024년 기준 경상지출액(8,502백만원) 전액을 언론진흥기금 전입금(8,500백만원)으로 조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 기금의 사업들을 언론진흥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적정함.

여 성 가 족 부

14. 양성평등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설 치 년 도	1995년	운용개시년도	1996년
주 무 부 처	여성가족부	기금관리주체	여성가족부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조건부존치	양성평등기금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나,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사업에 지원이 미흡하여 기금 목적의 달성이 사실상 어렵고, 복권기금 전입금 외 다른 재원 없이 운영되고 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복권기금사업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이는 다년간의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지만, 기금 사업의 관리와 재원 다양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미흡하므로 설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기금 사업의 합목적성 제고와 다양한 재원 발굴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이 3.4%로 미흡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도 92.1%로 과다함. 또한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기금규모 대비 과소하며 현행 재원구조 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수입재원을 발굴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복권기금을 통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1995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 1996년부터 운용을 개시하였다. 설치 초기에는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2004년 「복권및복권기금법」에 근거하여 복권기금이 전입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재원은 모두 복권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3조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 제43조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 지원,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여성·아동 인권 보호’의 단위 사업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3개 사업과 ‘가족정책 및 돌봄지원’의 단위 사업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등 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양성평등기금은 「대한민국헌법」⁸⁾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다. 이때,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3조). 실제로, 「양성평등기본법」 제43조에서 양성평등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양성평등 실현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양성평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금은 동법 제43조 제4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서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기금이 복권기금의 비법정 배분 사업에 의존하므로,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8) 양성평등과 관련한 조항은 제34조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제36조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의 두 가지이다.

제3항 제3호)에 따라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신청하기 때문이다. 즉 양성평등기금은 복권기금의 용도에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이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합목적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본 기금은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전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및 불인정액 반납에 따른 금액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이 3.4%로 미흡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도 92.1%로 과다하다. 또한 본 기금의 경상사업비는 전액 복권기금전입금(공익사업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기금규모 대비 과소하게 나타나며 복권기금은 연도별로 배정받아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는 구조이므로 현행 재원 구조 하에서는 중기가용자산의 축적이 어렵다. 본 기금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양성평등기금의 주요 용도에는 일반회계 재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양성평등기금은 복권기금의 사용 용도로만 제한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이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명시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요 재원이 복권기금으로 한정되면서 복권기금의 용도 외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권기금 외 다양한 재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9년과 2022년에 같은 권고가 반복되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기금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거나, 복권기금 외 다양한 재원을 발굴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전제로 ‘조건부준치’를 권고한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양성평등기금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이 유지되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기초함. 또한,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일정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 이런 이유로, 양성평등의 실현을 지원하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는 타당함.
- 양성평등기금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함. 이때,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함(동법 제3조).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세계 성 격차(Gender Gap Index, GGI)는 국가별 남녀 평등 수준을 나타내는데, 한국은 69.6%로 146개국 중 94위임(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 지표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 참여와 기회 112위, 교육 참여 100위, 보건 및 생존 47위, 정치 권한 72위 순으로 나타남(WEF, 2024, Global Gender Gap 2024, <https://www3.weforum.org>).
-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GII)에서 한국은 1990년 0.304점에서 2024년 0.062점으로 높아져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이 상당 정도 개선됐다고 판단할 수 있음(<표 1> 참조).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생식건강부문(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이 높고, 여성 권한(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과 노동 참여(경제활동참가율) 부문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

〈표 1〉 성불평등지수(GII) 추이

분야	지표	1990년	2022년
GII value		0.304	0.062
생식 건강	모성사망비	30.8	8.0
	청소년출산율	4.1%	2.1%
여성 권한	의원비율 성별 격차(여성)	-94.0%(3.0%)	-62.7%(18.6%)
	중등교육 이상 인구 성별 격차(여성)	-20.1%(57.5%)	-9.8%(83.8%)
노동 참여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여성)	-21.3%(47.0%)	-18.6%(55.0%)

주: 한국의 최신자료는 2024년(지표누리)이나 세부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며, UNDP의 최신자료는 2022년임. 여성 권한 및 노동 참여의 지표값은 gender gap을 뜻하며, ()은 여성 비율을 뜻함.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GII 지표의 한국 자료 인출
 (<https://hdr.undp.org/data-center/thematic-composite-indices/gender-inequality-index#/indicies/GII>)

○ 여성가족부는 4개의 전략목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43조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제1호), 양성평등 실현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제2호), 양성평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제3호) 등으로 규정함. 이에 근거한 본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사업은 전략목표 II에 집중되어 있음(〈표 2〉 참조).

- 현재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은 동법 제43조 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서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제1호)’과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 지원(제2호)’,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임.

- 이는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이 복권기금의 비법정 배분 사업에 의존하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임. 즉, 양성평등기금의 재원 구조로 인해 복권기금의 비법정 배분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금사업이 운영되는 데서 기인하는 한계로 볼 수 있음. 현재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전략목표 II의 사업은 복권기금의 비법정 배분 사업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복권기금사업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희박함.

- 따라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법 제43조에 근거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권 기금 외 다른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현재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 기금 목적의 일부만 달성할 수 있음.
- 이는 2019년과 2022년 기금 존치 평가에서 계속 제기된 문제이지만, 여성가족부는 복권기금 외 다른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기금 목적과 용도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도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즉, 기금 설치는 타당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이 유효하지만, 기금의 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2〉 여성가족부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기금 용도
Ⅰ. 일·생활 균형과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1.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법 제43조 4항 및 시행령 제27조 2항
	2.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Ⅱ. 여성 경제 활동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한을 강화한다.	법 제43조 1항
	2.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협력을 활성화한다.	법 제43조 1항 법 제43조 3항
Ⅲ.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1.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2. 안전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 미래역량을 제고한다.	
	3.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Ⅳ. 5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1.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법 제43조 4항 및 시행령 제27조 1항
	2. 폭력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법 제43조 4항 및 시행령 제27조 1항

주: 굵은 글씨체는 현재 양성평등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임.

자료: 여성가족부(2024).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본 기금에서 수행 중인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의 3개 세부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과 제43조의 4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한 기금의 용도에는 부합함.

- 법 제1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고, 제43조 기금의 용도 역시 전 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사업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 등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여 성차별적 구조를 완화하고, 양성평등으로 가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함.
- 또한, 헌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일정 수준의 부합성이 있음.
- 본 기금에서 수행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3개 세부 사업(한부모가족 지원)은 법 제1조에 명시된 기금의 주된 설치 목적과 제43조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한 기금의 용도에는 낮은 수준의 부합성이 인정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소득자와 양육자 다중의 역할을 1인이 수행해야 하는 가족 특성으로 인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성별 격차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님. 다만, 취약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의무지출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이 인정됨.
- 양성평등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의 중장기 운용계획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일부 부합하나, 일부 계획은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과 부합하지 않음.
- 양성평등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은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여성 및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설정됨.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가족 내 성평등 증진’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가족 내 성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실질적인 기여를 통해 사회적으로 평등한 가족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다문화가족에는 평등한 가족 구조의 구축을

위한 지원이 적절하지만, 한부모가족에서 가족 내 성평등 증진의 목적은 적절하지 않음. 다문화가족은 2015년 299,241가구에서 2023년 415,584가구로 증가했으나,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2005년 8.6%에서 2023년 6.6%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가족 지원의 한 형태로 운영하던 ‘아이 돌봄’사업 역시 취약·위기 가구 지원이라는 기금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보편적인 가족 돌봄으로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음.
 - 여성 및 아동 청소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중장기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됨.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음.
-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나, 실제 양성평등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과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 지원’으로 한정됨. 이는 2004년부터 복권기금이 전입되어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것임.
-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중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과 맞춤형 가족 정책 사업을 기반으로 복권기금을 신청한 후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운용하고 있음. 이는 양성평등기금이 복권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함.
 - 현재 기금으로 운영 중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여성가족부에서 복권기금 사업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도 복권기금 공익사업으로 배분되나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음.

〈표 3〉 양성평등기금 사업과 복권기금 연계성

양성평등기금 사업	법적 근거	복권기금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소년성보호법	○
2.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스톱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
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5.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
7.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 아이돌봄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주: ○ 표시는 부처 제출 자료에서 사업의 추진 근거로 복권기금을 언급한 사업임.

자료: 여성가족부(2025). 양성평등기금 2025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목적은 타 기금과 중복성·유사성이 없으나, 현재 기금에서 운영 중인 사업의 일부가 다른 기금사업의 목적과 부합함.
 - 양성평등기금은 헌법에 근거하여 양성 평등을 실현하는 목적으로는 유일한 기금임.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복지 증진이라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은 더욱 직접적으로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자립과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의 목적에 일치함.
 - 또한, 교육부 저소득층 장학사업이 복권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운영 중임.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양성평등기금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양성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해 설치됨.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금은 지방 양성평등기금의 법적·정책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사유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에게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정책의 심의를 위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여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성차별개선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여성 관련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개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법제처, <https://www.law.go.kr/>).
-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의 전부 개정 사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어...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법제처, <https://www.law.go.kr/>).
- 이러한 법 전문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기금은 여전히 여성의 권익 보호와 위기·취약 가족의 지원에 초점을 맞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의 지원,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등’을 용도로 지정하고 있어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예,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되거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양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등'을 용도로 지정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목적을 확장하여 운영(예,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함.

- 국가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양성평등기금이 지방양성평등기금의 존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존치할 정책적 필요가 있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은 3.4%로 미흡함.
 - 본 기금의 과거 5년 자체수입은 연평균 22,891백만원이고 향후 3년간은 연평균 20,459백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 산정을 위한 자체수입은 평균 21,979백만원인 반면, 경상지출은 647,945백만원으로 자체수입비중은 3.4%로 나타남.
 - 그러나 자체수입 중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반납잔액이며, 이는 복권기금으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므로 자체수입이라 보기 어려움.
 - 본 기금은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전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및 불인정액 반납에 따른 금액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기금관리비 목적으로만 지출하고 있으며 이 외 경상사업비는 전액 복권기금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하고 있음.
 -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또한 복권기금 전입금의 사업대기성 자금을 일시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실질적으로는 복권기금 전입금을 통해 조성되는 재원이라 이 또한 자체수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92.1%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과다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은 주로 복권기금전입금(공익사업전입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4년에 발생한 839,895백만원의 총수입 중 복권기금 전입액은 737,764백만원으로 87.8%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향후 3년의 총수입 대비 복권기금전입금 의존 정도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과소함.

- 본 기금의 평가대상기간 순수지차를 토대로 산정된 적정기금규모 범위는 2,286,526백만원에서 2,614,715백만원까지이며, 중기가용자산은 88,821백만원으로 적정기금규모 범위 최소금액보다 과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금의 적정규모 범위 금액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본 기금의 자체 수입이 경상지출 대비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과소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그리고 복권기금전입금의 경우 단년도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구조이므로 현재의 기금 재원조성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중기가용자산규모 과소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3년 평가부터 지속적으로 자체수입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매 평가때마다 있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재원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본 기금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복권기금을 통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기금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적정함.

15. 청소년육성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청소년기본법 제53조		
설 치 년 도	1987년	운용개시년도	1989년
주 무 부 처	여성가족부	기금관리주체	여성가족부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조건부존치	청소년 활동지원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육성이 일반회계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분리 운영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기금의 재원 구조를 볼 때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경상지출대비 자체수입비중이 7.1%로 미흡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도 85.6%로 과다함. 또한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기금규모 대비 과소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복권기금전입금 의존도를 줄이고 경륜·경정수익금과 같은 자체수입원을 발굴하여 여유자금을 축적하여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의 지원 및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교육 등 청소년육성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함께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을 출연하여 조성하였으며, 1991년 「청소년기본법」 시행 및 「경륜·경정법」 제정으로 경륜·경정 수익금이 전입되었고 2007년부터는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해 복권기금이 전입되었다. 현재 재원은 복권기금과 경륜·경정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륜·경정 수익금 규모가 크게 감소하자 2021~2023년까지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부족한 재원은 2022~2024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차입하였으며, 2032년부터 3년 간 상환할 계획이다. 본 기금의 용도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지원,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기금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및 그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청소년기본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다. 2025년 현재 총 6개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5개의 청소년 정책 및 역량강화 사업과 1개 여성·아동 인권보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활동 지원과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설치 당시 유소년 부양비는 42.0명이었으나, 2025년 유소년 부양비는 14.6명으로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이 복권기금 공익사업의 의존이 커 청소년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본 기금은 경륜·경정 수익금, 기타이자 및 재산수입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이 7.1%로 미흡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도 85.6%로 과다하다. 또한 본 기금 전체 사업비 지출 중 복권기금 공익사업비 비중이 95.8%에 달하는 등 복권기금 의존도가 높아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기금규모 대비 과소하게 나타나므로 장기적으로는 복권기금전입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륜·경정수익금 등 자체수입의 추가 확보를 통하여 여유자금을 축적·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육성 사업에 대한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육성 사업이 고르게 분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기금의 주요 재원이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이므로, 기금 사업은 대부분 청소년 복지에 한정적으로 편성되었고,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보호 사업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여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보호 사업을 기금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지적은 다년간 꾸준히 이뤄졌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계속 사업을 유지하면서 수요의 감소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사업 확장이 이뤄졌다. 청소년육성기금 내 사업은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청소년 활동 지원,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 복지 지원 및 맞춤형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당시 유소년 부양비는 42.0명으로 매우 높았고, 인적자원투자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는 매우 타당했음. 특히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설치했으므로 기금의 설치 요건도 충족함.(「국가재정법」 제5조).
-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제3조 1호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호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9세부터 17세까지의 사람은 정책 대상으로서 ‘아동’이자 ‘청소년’임. 이는 초·중·고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나이와 중복되므로, 이 나이는 아동이자 청소년, 학생의 신분을 동시에 갖게 됨. 이런 이유로 청소년 육성은 필연적으로 아동 복지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학교 교육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됨. 따라서, 청소년 육성이라는 정책 목적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청소년 육성 기금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함.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추세 속에서 유소년 부양비는 1987년 42.0명에서 2025년 14.6명으로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2035년 최저(11.7명) 이후 반등하나 15명 전후로 유지될 전망이다. 즉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와 노년부양비의 급증은 국가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특히 아동·청소년·학령기 학생 대상 중복적인 재정 투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런 이유로 청소년육성기금의 ‘청소년 육성’이라는 특정한 목적이 유효하더라도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면 기금의 존치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수행 중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등 6개 사업은 모두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함. 다만, 청소년 육성 중 청소년 활동(3.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과 청소년 보호(1. 아동·청소년성보호활동)는 일부이며, 대부분 청소년 복지(2.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 청소년안전망 구축(단위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업별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이므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없음.

-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함(「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2호). 즉,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 활동(동법 제3조 제3호), 청소년 복지(동법 제3조 제4호), 청소년 보호(동법 제3조의 5호)를 뜻하며, 이러한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청소년 시설이라고 함(동법 제3조 제6호).

<표 1> 청소년 육성 기금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아동·청소년 성보호 활동	1.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청소년 참여 및 활동지원	2.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지원	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청소년수련시설 협력 강화 및 발전지원사업
청소년 안전망 구축	4.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안전망운영, 청소년상담 1388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패키지 지원
	5.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 사회복무요원배치지원,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6.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자료: 여성가족부(2025). 청소년육성기금 2025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 청소년육성기금의 목적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설치 목적만을 고려한다면 중복성이나 유사성을 가지는 기금은 없으나, 청소년육성기금 설치의 본래 목적보다는 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는 복권기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면서 기금의 목적 달성이 제한됨.
- 전체 6개 세부 사업 중 5개 사업이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으로 지원받고 있음 (<표 2> 참조). 이로 인해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포함하는 청소년 육성’에 있으나, 실제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는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복지(청소년 사회안전망)’로 이뤄지며, 이는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3호(“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임.

<표 2> 청소년육성기금 사업과 복권기금 연계성

청소년육성기금 사업	법적 근거	복권기금
1.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 청소년기본법	○
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4.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 청소년복지지원법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5.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
6.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보호법	○

주: 부처 제출 자료는 청소년육성기금 사업 중 복권 기금 공익사업을 명시하지 않음.

자료: 복권위원회. 2025년 기금사업 현황(bokgwon.go.kr)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함.

-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은 주요 수입원인 복권기금의 전입금이 83% 수준이고, 경륜경정 수익금은 4%에 불과함. 이런 이유로,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에 대한 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청소년기본법」 제54조에 따르면,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은 정부의 출연금(제1호), 「국민체육진흥법」과 「경륜·경정법」에 따른 출연금(제2호),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제3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제5호)으로 구성되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제1호),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제2호)을 규정하고 있음. 즉, 기금의 조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령에 근거하여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한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중 제3호는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구성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최근 청소년 출산율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급증하고, 청소년 성인영상물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등 온라인 기반 성범죄 및 유해환경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과거 청소년 보호는 근로 청소년 혹은 학교 밖 청소년 등 보편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재했으나, 이제 청소년 보호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보편적인 청소년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사업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목적이지만 복권기금의 공익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의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 다만, 이 역시 경찰청, 교육부 등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은 7.1%로 미흡함.
 - 본 기금의 과거 5년 및 향후 3년 자체수입은 연평균 10,673백만원이고, 경상지출은 150,615백만원으로 자체수입비중은 7.1%로 나타남.
 - 본 기금은 경륜·경정수익금, 기타이자 및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상사업비의 대부분을 복권기금전입금(공익사업)에 의존(전체 사업비 지출 중 복권기금 재원 사업비 비중 95.8%)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은 2024년 기준 11.0%이며 향후 3년의 자체수입비중은 지속적으로 1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85.6%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과다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은 주로 복권기금전입금(공익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4년에는 총수입 177,687백만원 대비, 148,383백만원의 복권기금이 전입되어 85.2%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향후 3년간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 또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총 20,100백만원 공자기금을 예수하였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과소함.
 - 본 기금의 평가대상기간 수지차를 토대로 산정된 적정기금규모 범위는 438,399백만원에서 476,425백만원까지이며, 중기가용자산은 17,696백만원으로 적정기금규모 범위 최소금액보다 과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본 기금이 외부재원인 복권기금전입금 의존도가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복권기금전입금의 경우 단년도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구조이므로 기금 조성 재원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중기 가용자산규모 과소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자체수입원으로 경륜·경정수익금이 있으나 71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며, '24년 기준 경상사업비 1,548억원 대비 4.59%에 불과한 수준임.
- 따라서 본 기금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복권기금전입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륜·경정수익금 등 자체수입의 추가 확보를 통하여 여유자금을 축적·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기금은 2024년말 기준 20,100백만원의 공자기금 예수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산 대비 부채/자산 비율이 66.2%로 기준치(50%) 대비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향후 예수금 상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인 사 혁 신 처

16. 공무원연금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공무원연금법 제76조		
설 치 년 도	1960년	운용개시년도	1960년
주 무 부 처	인사혁신처	기금관리주체	공무원연금공단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공무원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금존치가 인정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존치평가 총평

-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6조와 제72조를 기반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연금회계에서 발생하는 적립금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적립하는 자금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1982년 공무원연금공단 설립 이후, 총무처에서 이관된 5,491억원의 기금을 계속 운영해왔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응하여 2001년에 보전금 제도를 도입해 매년 부족한 연금지급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부과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연금개혁, 2018년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2021년 수급자 간 형평성 보정 등 총 38회의 연금법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수행하고 있다.
- 본 기금은 연금 및 재해보상급여 사업, 연금대부사업, 주택사업, 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연금사업의 경우, 기금만으로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워 정부 보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연금대부사업, 주택사업, 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의 공무원 복지 향상 목적의 사업들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금사업으로 운용됨이 타당하다.
- 공무원연금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본 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한다면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이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대부사업·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의 근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여 대국민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기금사업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최근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금 측면에서도 운용 수익을 최대화하여 정부 보전금의 일부라도 보전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되며,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여겨진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이 여전히 유효함.
- 퇴직 공무원과 사망 공무원의 유족에게 퇴직급여, 퇴직수당 및 유족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해오고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연금제도가 성숙되고,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적인 저성장의 경제환경 속에 지속적인 연금개혁 노력이 요구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이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㉔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17. 기술보증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설 치 년 도	1986년	운용개시년도	1989년
주 무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기금관리주체	기술보증기금
관 리 방 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은 신기술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기술금융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기금의 설치 목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의 중요성과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재 경제·사회적 환경에서 본 기금의 존치는 타당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적정	경상지출대비 자체수입비중이 103.7%로 적정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도 4.0%로 적정함. 또한, 중기가용자산도 적정기금규모 범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적정함.

3. 존치평가 총평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6년 기술보증기금법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기술평가, 구상권 관리, 팩토링 금융의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첨단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술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한 현재의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수행 중인 5개 사업도 모두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되어 기술보증기금의 존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본 기금은 보증방식의 정책금융 지원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유사성이 있어 보이나 설치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보증기금의 주요 사업 중 기술평가사업은 여타 정책금융사업과 비교하여 가장 전문화된 영역으로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기금은 정부 정책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지원 가능성을 축소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기술평가사업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의 노력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인 금융기관출연금, 보증료 수입, 구상채권 회수 및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상지출대비 자체수입비중이 103.7%로 적정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도 4.0%로 적정하다. 또한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기금규모 범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적정하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현재의 경제·사회적 환경에서 기술보증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존치의 타당성이 인정됨.
 -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친환경 기술 등 첨단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혁신 성장의 촉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의 노력이 필요함.
 -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내수 및 수출의 하방압력으로 경기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혁신활동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기술보증제도를 기반으로 신기술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술보증기금의 설치 목적은 현재 상황에도 유효함.
- 기술보증기금에서 수행 중인 기술보증 사업 등 5개 사업은 모두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설치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방식의 정책금융 지원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유사성을 보이나, 기술보증제도를 기반으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하여 타 기금과 설치목적이 차별화되어 있음.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사업은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신기술사업자에게 금융 및 정책지원을 연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촉진과 국가 차원의 기술 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의 노력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정부 정책 대응으로 세부 사업실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 기금과의 중복보증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은 103.7%로 적정함.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인 금융기관출연금, 보증료 수입, 구상채권 회수 및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과거 5년 및 향후 3년 자체수입은 연평균 1,550,903백만원이고, 경상지출은 1,496,022백만원으로 자체수입비중은 103.7%이며 2025년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금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자체수입비중이 79.8%로 일시적으로 감소(2024년의 경우 99.4%)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자체수입비중 평가 기준치인 2/3를 초과하는 비율임.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4.0%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적정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은 정부출연금(일반회계전입금)이며 2024년에는 2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았고, 향후 3년간은 매년 4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적정함.
 - 본 기금의 평가대상기간 수지차와 보증잔액 규모를 토대로 산정된 적정기금 규모 범위는 2,709,479백만원에서 3,878,306백만원까지이며, 중기가용자산은 2,992,973백만원으로 적정기금규모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기금의 2024년말 부채/자산 비율은 31.6%로 기준치(50%) 대비 적정함.

1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 치 년 도	2015년	운용개시년도	2015년
주 무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기금관리주체	중소벤처기업부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기금의 설치 목적이 현재의 사회·경제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함. 기금의 사업 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타 기금과의 중복성 우려가 낮으나 경상사업의 내용은 일반 재정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24.2%로 미흡한 수준임.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77.3%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규모에 비해 과소한 상태임. 다만,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 목적 달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원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의 축소,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 개선(직접융자보다는 이차보전방식의 지원 등), 신규 수입원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낮추고 중기가용자산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존치평가 총평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2015년 설치된 뒤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본 기금은 크게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라는 두 가지 기금 설치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해 1개의 융자사업(소상공인지원 융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등 3개의 경상사업을 운용 중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에서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을 진행 중이고 소상공인지원에서는 기업가형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공인 특화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7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전통시장활성화지원의 경우 시장상권경영 혁신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 2015년 본 기금이 시작된 이후 소상공인이 기업수 및 종사자수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정책 대상은 경기변동 충격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촉진이라는 기금 설치의 초기 목적은 여전히 유효성을 갖는다.
- 본 기금의 주된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융자금원금회수액과 융자이자수입이 주요 수입원이며, 이를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 중 자체 수입비중은 24.18%로 미흡한 수준이며, 차입금 및 정부내부수입비중은 77.29%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다. 또한, 중장기가용자산은 최저수준인 6,929,875 백만원에 미달하는 1,328,015백만원으로 과소하다. 본 기금은 융자원금회수액과 일반회계전입금, 외부차입금으로 경상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어, 부채비율 143.94%로 자본잠식 상태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성격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의 축소,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 개선(직접융자보다는 이차 보전방식의 지원 등), 신규 수입원에 대한 발굴 등이 절실히 하며 중장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낮추고 중기가용자산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이상을 종합할 때 본 기금은 존치함이 타당하다. 다만, 본 기금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재원구조가 매우 열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수입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는 일반 재정사업 성격의 여러 사업을 본 기금을 통해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인식된다. 현재 운용 중인 경상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재정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본 기금을 통해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유효함.
 - 소상공인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수 및 종사자수 측면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소상공인이 경기변동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공적 부문에서 경기변동 충격을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인정됨.
- 본 기금은 현재 1개의 융자사업과 3개의 경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은 전체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함.
 - 세부사업의 지원대상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으로 설정되어 있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열거되어 있는 기금의 사용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체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세부사업은 정책대상이 소상공인·전통시장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재정사업의 성격을 지님.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타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융자원금의 회수 및 이자수익의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 비중은 24.18%로 미흡한 수준임.
 - 자체수입 중 융자원금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81.20%(2024년), 이자수입은 5.72%를 차지하고 있음.
 - 과거 5개년 자체수입비중은 16.56%이고 향후 3개년의 자체수입 비중은 61.78%로 자체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2020년 ~ 2022년까지 경상지출을 급격하게 늘려 자체수입비중이 2022년 5.66%까지 하락함. 이후 자체수입비중이 다시 회복되어 68.13%(2023년 ~ 2027년)까지 증가함.
- 본 기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금, 융자원금, 이자수익 등의 기금재원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융자사업, 자금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수입재원과 기금사이의 연계성이 있음.
- 본 기금 총수입 중 차입금 및 정부내부수입의 비중이 77.29%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과거 5개년 및 향후 3개년)
 -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차입금 및 일반회계전입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2년 93.29%까지 상승하였고 이후 약 45.46%(2023년 ~ 2027년)로 낮아 졌으나, 여전히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43.94%로 매우 높아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음.
 - 기금의 순자산은 -6,412,753백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임.
 - 부채 21,006,323백만원 중 차입부채는 20,911,370백만원으로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55%로 적극적인 부채의 관리가 필요함.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규모보다 과소함.
 -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1,328,015백만원으로 적정규모 최소기준 6,929,875백만원에 미달하여 적정규모보다 과소함.

해 양 수 산 부

19. 수산발전기금

1. 기금개요

설 치 근 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6조		
설 치 년 도	1999년	운용개시년도	2001년
주 무 부 처	해양수산부	기금관리주체	해양수산부
관 리 방 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수산발전기금사무국 (수협중앙회)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치	본 기금 사업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고, 수산분야에서 유일한 통합기금으로 타 기금과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기에 기금 존치의 타당성이 인정됨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부적정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이 99.9%로 적정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도 4.6%로 적정함.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기금규모 대비 과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경상사업 및 융자사업 확대 편성 규모의 조정 및 자산 유동화 방안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등 자체수입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수산발전기금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등 국제어업 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육성·발전 도모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기금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운용을 개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근거법이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수산업 기본법)」으로 이관된 수산분야 유일의 통합기금이다. 주요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타 회계 또는 기금의 전입금 및 예수금, 기타 가산금 및 부담금, 매각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 기금은 2023년 기준으로 12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 환경 개선(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 해양 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품목별 경쟁력 강화(우수 수산물 지원사업), 수산물 가격 안정(비축사업, 수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수산물 구매지원 사업), 유통·가공시설(수산물 유통정보 조사사업), 수산물 유통자금 지원(산지 및 소비지 유통 자금사업), 수산자원 회복(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지원 사업), 어업 경영자금(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사업, 양식 어업 지원사업, 수산장비 구입 지원사업,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 안정자금 사업, 수산 모태펀드 출자사업), 직접피해 지원(피해보전 직불금 사업, 자유무역 협정 이행사업), 원양어업기반구축(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 등이 있다.
- 본 기금 사업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고, 수산분야에서 유일한 통합기금으로 타 기금과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기에 기금 존치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인 수산물공매납입금 및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금(재고자산 매각대), 여유자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안정적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이 99.9%로 적정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도 4.6%로 적정하다.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적정기금규모 대비 과소하다고 평가되므로 향후 경상사업 및 융자사업 확대 편성 규모의 조정 및 자산 유동화 방안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등 자체수입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등 국제어업 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육성·발전 도모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본 기금의 목적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에서 수행 중인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우수수산물 지원, 수산물자조금 지원사업, 수산물 구매지원, 비축사업, 수산물 유통정보조사, 산지 및 소비자 유통자금, 연근해어장 생산성개선 지원, TAC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양식어업 지원, 수산장비 구입지원,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산모태펀드 출자, 피해보전직불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원양어선 안전관리 등 18개 사업은 모두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함.
- 해양 환경 개선(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 해양 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 환경 개선으로 본 기금 목적과 부합함.
- 품목별 경쟁력 강화(우수 수산물 지원사업)은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으로 본 기금 목적과 부합함.
- 수산물 가격 안정(수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수산물 구매지원 사업, 비축사업)은 산지 출하 수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으로 본 기금 목적과 부합함.
- 유통·가공시설(수산물 유통정보 조사사업)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본 기금 목적과 부합함.

- 수산물 유통자금 지원(산지 및 소비지 유통 자금사업)은 산지 출하 수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으로 본 기금 목적과 부합함.
- 수산자원 회복(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지원 사업)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 개선으로 본 기금 목적과 부합함.
- 어업 경영자금(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사업, 양식어업 지원사업, 수산 장비 구입 지원사업,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 안정자금 사업, 수산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어업인소득안정지원으로 본 기금 목적과 부합함.
- 직접피해 지원(피해보전 직불금 사업, 자유무역 협정 이행사업)은 수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로 본 기금 목적과 부합함.
- 원양어업기반구축(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은 노후 원양어선 대체건조 지원 및 어선원 복지증진으로 본 기금 목적과 부합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등 국제어업 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육성 · 발전 도모를 위한 재원확보로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의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비중은 99.9%로 적정함.
 - 본 기금은 법정부담금인 수산물공매납입금 및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금(재고자산 매각대), 여유자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안정적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과거 5년 동안의 자체수입은 연평균 657,818백만원이고, 경상지출은 579,045백만원으로 자체수입비중은 113.6%에 달했음.
 - 다만, 향후 3년 동안의 자체수입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 상승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정책자금 용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지출은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어 향후 3년의 자체수입비중은 73.6%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4.6%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적정함.
 - 본 기금은 최근 5년간은 차입금이나 공자기금 예수가 없었으나 향후 경상사업(비축사업 등) 및 용자사업(긴급경영안정자금 등) 확대 편성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기금 유동성 유지를 위한 공자기금 예수를 검토하고 있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적정기금규모 범위 대비 과소함.
 - 본 기금의 평가대상기간 순수지차를 토대로 산정된 적정기금규모 범위는 379,262백만원에서 506,745백만원까지이며, 중기가용자산은 249,168백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과소함.

- 이는 본 기금 용자사업 관련 장기대여금 47,622백만원과 모태펀드 출자 금액 177,500백만원 등 기금의 주요 자산항목이 유동화불가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으로 향후 경상사업 및 용자사업 확대 편성 규모의 조정 및 자산 유동화 방안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등 자체수입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본 기금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2024년말 현재 부채/자산 비율 적정함.

2025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발행일 : 2025. 5.

발행처 : 기획재정부

(044) 215-5352

(044) 215-5354

인 쇄 : (주)삼일기획

(044) 866-3011
